발 행 인 : 서 울 특 별 시 장
편 집 인 : 공 보 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731-6328

서울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2451호 2002. 12. 26.(목)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치법규

[조 례]

제4037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개정조례 ····· 5
제4038호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 ····· 9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포커스<http://www.metro.seoul.kr 서울뉴스→서울시보 클릭>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328 / FAX. (02)731-6730

◉ 서울시보발간일은 5일, 10일, 15일 ·····5일주기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2부)하며, 내용이 많을 경우 디스켓 또는 e-mail : sibo2000@seoul.go.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평 일 14:00 / 토요일 11:00

※ 시보게재접수(문서나 FAX 또는 E-mail)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수송 → D일 보급

※중복된 공고(신문,관보,시보,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시다.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 람										

서울특별시

제4039호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 ····· 11
제4040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11

[규 칙]
제3282호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 12
제3283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 13
제3284호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 14
제3285호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 17

◉ 고 시
제2002-440호 서울당산동임대아파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32
제2002-44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업무설비)의시행자지정(변경)및실시계획인가(변경) ····· 33
제2002-4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 ····· 35
제2002-4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작성 ····· 38
제2002-44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 46
제2002-447호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지정 ····· 52

◉ 공 고
제2002-1435,1447호 다단계판매업자등록사항변경 ····· 60
제2002-1436호 일반건설업등록 ····· 60
제2002-1438호 전기공사업법위반업체등록취소 ····· 61
제2002-1439호 전력시설물의감리업등록 ····· 61
제2002-1442호 보육교사교육원소재지및명칭변경 ····· 61
제2002-1443호 시의회부의안건 ····· 62
제2002-1444호 일반건설업등록반납 ····· 62
제2002-1446호 방문판매업등에관한법률위반다단계판매업자시정권고공시송달 ····· 62
제2002-1448호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행정처분을위한청문통지서공시송달 ····· 64
제2002-1449호 다단계판매업자휴업 ····· 65
제2002-1450호 전력시설물의설계·감리업등록 ····· 65
제2002-1451호 차량의운행제한 ····· 66

◉ 구 고 시
제2002-6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용산구) ····· 67
제2002-120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성동구) ····· 67
제2002-5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광진구) ····· 68
제2002-5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중랑구) ····· 68
제2002-11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도로,광장)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동대문구) ····· 70
제2002-14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성북구) ····· 80

제2002-10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강북구) ····· 82
제2002-102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실시계획인가(강북구) ····· 82
제2002-103호 수유제1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결정(강북구) ····· 84
제2002-104호 미아제3,4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결정(강북구) ····· 84
제2002-9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노원구) ····· 88
제2002-101호 도시계획사업(불광어린이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은평구) ····· 89
제2002-11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에따른지형도면(강서구) ····· 93
제2002-108호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구로구) ····· 93
제2002-11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구로구) ····· 94

◉ 구 공 고
제2002-434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업체청문실시(광진구) ····· 96
제2002-435호 도시계획공람(광진구) ····· 98
제2002-506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건설)실시계획공람(중랑구) ····· 99
제2002-513호 건설업신규등록(중랑구) ····· 99
제2002-428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공사완료(노원구) ····· 99
제2002-628호 전문건설업등록(은평구) ····· 100
제2002-438호 도시계획사업(방수시설)실시계획인가고시를위한공람(양천구) ····· 100
제2002-413호 도시계획사업(새싹어린이공원)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강서구) ····· 104
제2002-329,331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금천구) ····· 110
제2002-535호 전문건설업등록(영등포구) ····· 110
제2002-564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서초구) ····· 110
제2002-547,548,549호 전문건설업등록(강남구) ····· 111
제2002-385,394호 전문건설업등록(송파구) ····· 112
제2002-416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강동구) ····· 112
제2002-419호 단계별집행계획수립(강동구) ····· 113

◉ 사업소고시
제2002-161,162,163호 하천점용의승인(한강관리사업소) ····· 120

◉ 사업소공고
제2002-가-17호 도시공원시설(독립공원주차장)관리위탁(공원녹지관리사업소) ····· 121
제2002-가-18호 도시공원시설관리위탁(공원녹지관리사업소) ····· 121
제2002-81호 도시공원시설사용허가(관리위탁)(서울대공원) ····· 121
제2002-56호 소방시설설계업공사업의변경등록(종로소방서) ····· 122
제2002-23호 소방시설공사업행정처분(성동소방서) ····· 122
제2002-58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강남소방서) ····· 122
제2002-36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서초소방서) ····· 123

제2002-78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송파소방서) ····· 123
제2002-79호 소방시설설계업신규등록(송파소방서) ····· 123

◉ 인사발령
발령제519~ 520호, 522호(인사행정과) ····· 124

◉ 기 타
제2002-2호 폐기물반입수수료고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27
제2002-271호 하천점용기간연장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 127

자 치 법 규

〔조 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2002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037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라 함은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설치 및 자금 구분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자금구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1. 노인복지계정
2. 장애인복지계정
3. 청소년복지계정
4. 기초생활보장계정
5. 주거지원계정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계정자금은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3장 기금의 재원 및 용도

제5조(노인복지계정) ①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노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4. 노인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노인의 자활 지원
7. 노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복지계정) ①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

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단체의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4.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
7.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복지계정) ①청소년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청소년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청소년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청소년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청소년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4. 청소년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 청소년의 자활 지원
7. 청소년복지계정의 자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기초생활보장계정) ①기초생활보장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기초생활보장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출받는 생업자금 채무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계정의 당해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주거지원계정) ①주거지원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시 이외의 자의 보조금
3.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의 매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시에 대한 이익배당금
4.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
5. 주거지원계정 자금의 대출상환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주거지원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저소득시민·장애인·노인(65세 이상) 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택재개발 및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도심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
3.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주거지원계정의 자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5.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

제4장 기금의 운용계획 등

제10조(기금운용계획 등)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는 제4조의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가.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 보건복지국장
   나. 청소년복지계정 - 문화관광국장
   다. 주거지원계정 - 주택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기초생활보장계정 - 사회복지과장
   나. 노인복지계정 - 노인복지과장
   다. 장애인복지계정 - 장애인복지과장
   라. 청소년복지계정 - 체육청소년과장
   마. 주거지원계정 - 주택기획과장
3.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구분별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기금운용관은 당해 계정의 기금운용계획시행 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 또는 다른 기금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계획의 공고) ①시장은 기금을 단체·법인 등에 보조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및 전산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정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및 금액
2. 지원조건
3.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4. 기타 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대출금의 이자율 등)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지원금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

에 대하여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5조(사무의 위임·위탁) ①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에 관한 사무중 지급대상자의 파악 및 지급사무를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시장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도시개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중 제6조·제9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재정운용조례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주택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8조 내지 제12조)을 삭제한다.

제13조제4항중 “제8조에서 정한 주택기금”을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기금”을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으로 한다.

제1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기금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① 부칙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기금의 각 계정이 승계한다.

1. 서울특별시기초생활보장기금 - 기초생활보장계정
2. 주택기금 - 주거지원계정

②부칙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조례에 의한기금 및 이 기금의 2002회계년도 결산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폐지 또는 개정조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사회복지기금과 성격이 유사한 기초생활보장기금·주택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운용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금을 5개의 계정으로 구분·운용하도록 함(제4조).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청소년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 주거지원계정
나.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정함(제5조 내지 제9조).
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고, 기금의 예탁방법과 일시 차입규정을 둠(제11조)
라. 지원금의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과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둠(제13조·제14조).
마. 이 조례에 의한 시장 사무 중 위임사무와 위탁사무를 정함(제15조).
○위임사무 :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대상자의 파악 및 지급사무를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
○위탁사무 :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원리금회수·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도시개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2002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038호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콜택시”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유 차량으로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에 의하여 운행하는 장애인전용차량을 말한다.
2. “콜센터”라 함은 제1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라 함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재수탁자”라 함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사무를 재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콜택시의 운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장애인콜택시운행) ①시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를 확보하여 운행한다.

②시장은 장애인콜택시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이용 대상)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급 중 1급 및 2급 장애인
2.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6조(이용신청 등) ①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콜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콜센터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요금) ①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호 다목의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시장은 제2항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고시한 요금을 시장(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콜택시의 관리·운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재위탁한 경우에는 재수탁자를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운행의 위탁)①시장은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
2. 콜센터의 운영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제1항제1호의 사무의 경우 동일인에게 2대 이상의 차량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1조와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수탁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제7조·제9조 내지 제11조·제13조·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수탁기관"은 "재수탁자"로 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장애인콜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행한 행위는 이 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서 차량을 확보하여 이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을 1급 및 2급장애인으로 함 (제5조)
나. 이용신청은 전화 또는 전산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도록 함(제5조)
다. 이용요금은 이용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되, 시장이 고시하도록 함(제7조)
라.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시장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제3자에게 이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제8조제1항 및 제2항)
마. 사무를 위탁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사후감독 등에 관하여는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8조제3항 및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2002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039호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의 2002회계년도의 결산잉여금은 서울특별시일반회계에 귀속된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주경기장건설 및 관련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 바, 월드컵주경기장을 차질없이 완공,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달성으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2002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040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위원회 포함) 중 공무

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시행을 말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의원 상해 등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무"의 범위가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규정보다 축소되어 있어 다양한 직무와 관련된 상해시 적절한 보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는 바, 이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를 확보하고, 의원의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2조 제1호 "직무"에 관한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회중 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공무수행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고

나.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의 개정·보완에 따라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의 준용 규정이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2000. 1. 31자로 폐지됨에 따라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 제3282호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

2002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제협력담당관·시정개혁단·정보화기획단 및 도시마케팅추진반"을 "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화기획단"으로, "기술심사담당관 및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홍보담당관 및 보도담당관"을 "홍보담당관·보도담당관 및 마케팅담당관"으로, "보도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을 "보도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마케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마케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마케팅 총괄 기획·조정·관리 및 주요사업의 실행
2. 도시마케팅과 관련한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
3. 도시마케팅과 관련한 기본계획·행동계획 수립 및 각 실·국 업무배분에 관한 사항
4. 도시마케팅과 관련한 실·국별 진행상황 점검·조정 및 품질관리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중 "정보통신반"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정보통신반장"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정보통신반장"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5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자원봉사자 활동 홍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0. 새서울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

제15조제1항중 "관광과·체육청소년과·월드컵기획담당관 및 월드컵시설관리반"을 "관광과 및 체육청소년과"로 하

고, 동조제2항중 “각 과장 및 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월드컵시설관리반장은 지방서기관·지방시설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을 “각 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하며, 동조제6항에 제17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17. 월드컵주경기장 건설분담금 정산에 관한 사항

18. 포스트월드컵 대책, 백서 발간 등 월드컵업무 마무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중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을 “교통운영담당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7항중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을 “교통운영담당관”으로 한다.

제8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월드컵경기장 중재업무 포함 분쟁업무 총괄(크레임, 중재, 소송)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에 대한 경과조치)본청 하부조직중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1999. 3.15)의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화기획단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소중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 규칙에 의한 교통운영담당관 및 마케팅담당관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월드컵관련 업무 등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해 온 월드컵기획담당관 등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기구의 정비(제3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5조, 제21조)

○기구폐지

- 시정개혁단, 월드컵기획담당관, 월드컵시설관리반

○기구명칭변경 및 존속기한 연장

- 교통운영개선기획단 → 교통운영담당관(2005년 12월 31일까지)
- 도시마케팅추진반 → 마케팅담당관(2005년 12월 31일까지)
- 보통신반 → 정보통신담당관(2005년 12월 31일까지)
-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2003년 12월 31일까지)

나. 한시기구의 정비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제12조, 제15조, 제80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프로그램 개발, 새서울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 자치행정과

○월드컵주경기장 건설분담금 정산에 관한 사항, 포스트월드컵 총괄 등에 관한 사항 → 체육청소년과

○월드컵경기장 중재업무 수행 총괄 → 지하철건설본부

◉서울특별시규칙 제3283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

2002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다음에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 장 보 칙

제48조(인사청탁자 공개) 시장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인사청탁을 배제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청탁자와 피청탁자의 신상과 청탁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9조(인사추천자 공개) 시장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 능력의 실증에 의한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추천자와 피추천자의 소속, 직위(급), 성명 등의 신상과 추천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내부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인사청탁 배제와 공개추천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직원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인사청탁자와 인사추천자 공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능력과 도덕성을 원칙으로 한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청탁자와 피청탁자의 신상, 청탁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정기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나. 공개추천 활성화를 통하여 우수직원의 발탁과 적재적소 인력배치, 부적절한 자의 추천을 예방하고자 추천자의 소속, 직위(급), 성명 등의 신상, 피추천자와의 관계, 추천내용, 피추천자의 신상을 내부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일정기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49조)

◉서울특별시규칙 제3284호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

2002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안에 의한 지정요청기한의 특례) 조례 제4조 단서의 "부득이 한 경우"라 함은 영 제5조의 자문을 위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결과가 재심의로 결정된 경우를 말한다.

제8조를 제8조의2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융자사무 위탁협의) 시장은 조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할 금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융자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중 제8조를 제8조의2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담보 또는 입보 등의 채권보전 조치를 한 후에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를 "융자대상자 명단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통보자중에서 이미 융자금이 지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융자금 및 이자를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융자금의 대하조건 및 상환) ①수탁기관에 대한 융자금의 대하금리는 제14조제1항에 의한 대출금리에서

협약으로 정한 위탁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한 금리로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2조제2항의 융자결정자에 대하여 담보 또는 입보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한 후에 대하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하자금은 7영업일(수탁기관의 영업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전액 대출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융자금의 대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대하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하원금의 상환은 3년 거치 후 2년간 연4회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매분기 마지막월의 20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⑤수탁기관은 제4항의 대하원금을 대출금의 상환여부에 관계없이 매분기마다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불입하여야 한다.

⑥대하이자는 일수별기간으로 계산하여 매분기 마지막월 20일에 납부하되, 첫 회분은 대하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한다.

⑦수탁기관은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금 상환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도시개발특별회계융자금 대하차용증서

대하금액	일금 원정 (₩)	
대하기간	. . . ~ . . .	
대출일자	년 월 일 (대출업체명 :)	
이 자 율	대하금리 년 %	
	대출금리 년 %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 및 도시개발특별회계융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대하금으로 차용하며 위 규칙 및 협약서에서 정한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은행장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도시개발조례가 개정하여 시행(2002.9.12)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융자사무 위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융자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할 금융기관과 융자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토록 함.(제8조)
나.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기관은 지급된 융자금 및 이자를 지체없이 회수토록 함(제13조)
다. 수탁기관에 대한 융자금의 대하 및 상환조건을 규정함(제14조의2)
1) 대하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위탁업무 수수료율을 공제한 금리로 함
2) 대하원금은 3년거치후 2년간 연4회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함

◉서울특별시규칙 제3285호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

2002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사비(추가소요 공사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공사비”으로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전분리공사)①조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전분리 계량기는 기존의 옥내배관·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1. 주택
2.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
3. 동일 지번에 소재한 별동의 건물로서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

②제1항의 수전분리계량기 설치공사에 대한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으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일시급수공사)①사업소장은 급수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일시급수공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사업소장은 제1항의 일시급수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시급수공사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일시급수의 사용승인기간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당해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기간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입급수관 개량공사비중 분기점에서 수도계량기보호통(공동주택은 주계량기)까지의 공사비(마당포장비 포함한다)는 시에서 부담한다. 다만, 정원시설 및 기타구조물 등 특수시설물의 이전 및 복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동조 제4항·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항 (종전의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5항(종전 제3항)중 “급수사용자”를 “급수사용자 등”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모사전송·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③민원접수담당자는 제1항의 신청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화 등으로 하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식을 작성하고, 민원접수처리부에 접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사업소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중지한 때에는 3개월마다 무단사용여부나 급수장치의 폐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중 “확인하고 누수량에 대하여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4개월 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의 요율을 적용하여 재조정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 누수요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급수사용자 등의 요구 또는 사업소장의 직권에 의하여 계량기 검정시험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검량으로 조정하고, 검정시험결과 형식인증계량기의 오차가 별표 5의 사용공차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경정사용량을 산출하여 정산한다. 다만, 점검량이 직전 정상사용량의 2배이상 격증한 경우로서 급수사용자 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인정조정하고 계량기검정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text{경정사용량} = \text{검침량} \times \frac{100}{100 \pm \text{검정오차}}$$

제30조제3항중 “매월 10일에 점검하여”를 “해당지역 정례검침일에 검침하여 매월”로 한다.

제32조중 “수도요금”을 “사업소장은 수도요금”으로, “납입고지서”를 “급수사용자 등에게 납입고지서”로 하며, 동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급수사용자 등은 납부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관할 구역외의 사업소장에게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중 “수납소인”을 “수납소인(전산처리시에 전산프로그램상의 수납부 또는 체납관리카드에 수납의 입력처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 제38호서식(전산처리시는 별지 제38-2호 서식)”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 제39호서식(전산처리시는 별지 제39-2호서식)”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중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 제41호서식(전산처리시는 별지 제41-2호서식)”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10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출장결과보고서”를 “검침결과보고서”로 한다.

제62조중 “조례 제32조”를 “조례 제32조제1항”으로 하여 동조 제1항 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도계량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어 수돗물사용량을 정상적으로 계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

가뭄또는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2. 한파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연재해

③사업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징수여부를 결정한다.

1. 한파로 인한 파손인 경우에는 동파신고 또는 검침시의 근무보고서

2. 제2항제1호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구청 등 관련기관의 기록

3.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 급수사용자 등이 제출한 신청서

제64조제2항중 “구술 또는 서면”을 “구술,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한다.

제65조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조례 제46조제5항”을 “조례 제46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조례 제46조제2항”을 “조례 제46조제2항제1호”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조례 제46조제2항 단서규정”을 “조례 제46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2의 주관경 30줄중 구경15란 “8”을 “10”으로 하고, 별표 5를 다음 과 같이 한다.

형식인증 계량기 사용공차의 범위

(제28조제3항 관련)

구경별	검사종류	사용공차 범위(%)
350밀리미터이내	전이유량	±4
	대류유량	±4

별지 제15호・제16호・제30호・제31호・제33호・제34호 및 제4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제38-2호・제39-2호・제41-2호 및 제8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시급수사용승인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승인을 받아 사용중인 일시급수사용자에 대한 일시급수사용승인기간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까지 연장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량기 사용공차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사용중인 K・S규격 제품인 수도계량기의 사용공차의 범위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인입급수관 개량공사비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인입급수관 개량 공사를 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납관리업무 전산화에 따른 경과조치) 제35조・제38조・제39조 및 제43조에 의한 체납관리카드 등의 작성 및 관리는 수납관리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되는 때까지는 종전의 방법에 의한 작성 및 관리를 병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급수중지·해제신청서(제22조제1항 관련)

주 소			
수전번호		업 종	
소 유 자		상 호	
수용가번호		중지지침	
급수중지사유		해제 지침	
시정 및 조치내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연락처 자택 HP)

○○수도사업소장 귀하

담당	과장	소장	결재

<접수구분>

방문( ), 서면( ). 모사전송( ), 인터넷( ), 전화( )

【별지 제16호 서식】

수 전 폐 전 신 청 서(제22조제1항 관련)

수전소재지			
소 유 자		상 호	
수 전 번 호		업 종	
수용가번호		구 경	

위 본인은( )사유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19조제1항에 의거 수전 폐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자택 HP)

체납확인

결재	담 당	과 장	소 장

확 인 자		체납유무	
직	성명		

<접수구분>

방문( ), 서면( ). 모사전송( ), 인터넷( ), 전화( )

【별지 제30호 서식】

과 오 납 금 처 리 부(제36조제1항 관련)

일련번호	과 오 납 발 생												과 오 납 처 리										
	발생인			납기		금 액				발생일자	통보일자	결 재			충 당				환 부				결 재		
	수전번호	성명	주소	월	일	상수	하수	물이용	계			담당	팀장	과장	정리일	충당액	충당내역	요구자인	청구일	금액	지불일	수령인(입금계좌)	담당	팀장	과장

【별지 제31호 서식】

과오납(충당·환부)결의서(제36조 제2항 관련)

소장			발 의	. . .	
			과오납 처리부 등기	. . .	
과장			충당(환부)통지서발행	. . .	
담당			환부 명령서 발행	. . .	
			충당(환부)명령번호	. . .	

년도 상수특별회계 하수특별회계 물부담회계	관 상수도사업수익 하수도사업수익 물이용부담금수익	항 영업수익	세항 급수수익	목 상수요금 하수요금 물이용부담금

구 분	납 기		정당납부		과오납부		납 부 자		
	년도	기분	월일	금 액	월일	금 액	수전번호	소재지	성명
상 수									
하 수							환부명령번호	환불계좌	
물이용									

과오납사유 :

구 분	충당할 납기금액			충당내역		과부족		적 요
	년도	납기	금액	월일	금액	잔액	부족액	
상 수								
하 수								
물이용								

【별지 제33호 서식】

과오납금환부명령서(제36조 제2항 관련)

제 호	년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징수관주관
채 주		

금 원

상 수	금 원
하 수	금 원
물부담	금 원

단, 감액환불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발행

징수관		작성자	
관	항	세항	목

제 호	년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징수관주관
채 주		

금 원

상 수	금 원
하 수	금 원
물부담	금 원

단, 감액환불

상기 금액의 과오납금을 환불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금고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

제 호	년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징수관주관
채 주		

금 원

상 수	금 원
하 수	금 원
물부담	금 원

단, 감액환불

① 상기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상기 금액을 채주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
징수관

서울특별시금고 귀하

【별지 제34호 서식】

과오납(환부,충당)통지서(제36조 제3항 관련)

수전번호				과오납처리부번호				
납부자주소					성명			
과오납액	납기	구 분	금 액	납부일자		환부이자㉯	환부내역	
				1차	2차		환부총액 (㉮+㉯)	충당후잔액 환불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급 수 공 사						
		물이용부담금						
		합계㉮						
	과오납사유							
충당내역	충 당 내 용							
	구분	미납내역		충당내역(㉰)		충당후 미납액	충당후잔액 (㉱=㉮-㉰)	
		납기	금액	납기	금액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계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지방세법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수 도 사 업 소 장

【별지 제38-2호 서식】

체 납 관 리 카 드

수용가 번 호	①					주 소	⑥	수요가명	주민등록번호
수 전 번 호	②	업종	③	구경	④			⑦	⑧
납 기	관리번호		⑤						

년	월	기본요금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기타	소계	가 산 금					합계	수납 소인	변경자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기타	소계			
⑨~															~⑩	⑪	

㉮정수처분	㉯재산압류	㉰정수해제	㉱압류해제	㉲소유자변동
○ 시 행( )	○ 시 행( )	○ 시 행( )	○ 시 행( )	○ 확 인
○ 미시행( )	○ 미시행( )	○ 미시행( )	○ 미시행( )	○ 미확인
○ 사 유( )	○ 사 유( )	○ 사 유( )	○ 사 유( )	

체납현황(전체) 현 체납현황 출력 닫기

[별지 제39-2호 서식]

소유자변동분체납관리대장

○체납사항

관리번호		수전번호		업종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체납내역	구 분	체 납 액	비 고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계		

○ 조치사항

변동내역	변동일자	주 소
조치내역		

수 정 출 력 닫 기

【별지 제41-2호 서식】

전산 수전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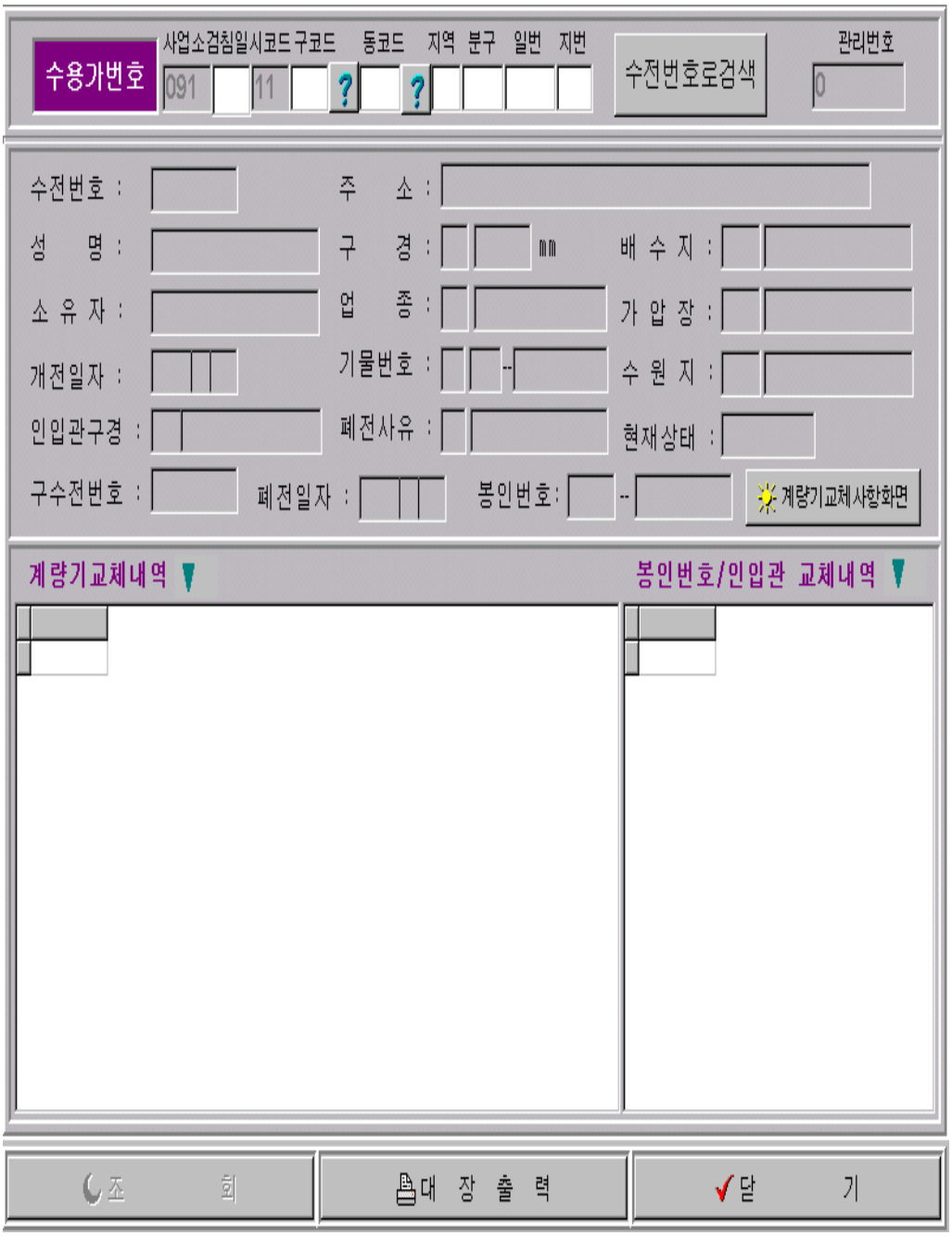

【별지 제46호 서식】

검침결과보고서(제50조제1항 관련)

명에 의거 구 동 지역 분구에 출장하여 검침업무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 동 지역담당 직명 성명 (인)

수탁회사명 : (인)

결재	담 당	과 장	소 장

1. 검침내용

검침 건수	정상 수전	비 정 상 수 전										
		소계	불회	회불	호폐	장애	침비	초파	문불	동파	역회전	기타 (누수등)

○업종변경 : 건(업종변경조서 작성)

○수도계량기교체수전 : 건(만기 : 건, 계량기고장 : 건,구경확대 : 건)

2. 비정상수전 조치내용

○수도계량기 교체요구

- 교체요구전표 : 건

○조례위반여부등 조사요구

- 근무보고서 : 건

3. 예상민원에 대한 조치사항

○민원검정요구 : 건

○옥내누수

- 누수확인 건

- 누수여부 확인요구 통보 건

4. 기타사항

【별지 제85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수도계량기설치비용면제신청서(제62조 제3항 관련)</td><td>처리기간
7 일</td></tr>
<tr><td rowspan="3">수용가</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전화
번호</td><td></td></tr>
<tr><td>수용가번호</td><td colspan="2"></td><td>수전
번호</td><td></td></tr>
<tr><td rowspan="2">신고내용</td><td>계량기
파손일시</td><td colspan="4"></td></tr>
<tr><td>원 인</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2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수도사업소장 귀하</td></tr>
</table>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시민의 상수도 이용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전분리 허용 확대, 인입급수관 개량공사비·복구비의 전액 시부담, 민원신청절차 개선 및 수도요금고지서 재발급기관의 확대 등 관련법령 및 수도조례의 개정과 현행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도계량기(수전)분리를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 동일지번에 소재한 별동의 건물사용자에게도 확대 허용함(제6조제1항)

나. 일시급수 대상을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일시급수사용승인기간을 당해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기간으로 개선함.(제8조)

다. 시에서 노후관 개량공사시 수용가의 인입 급수관개량공사비 및 마당포장비를 시민에게 부담시켰으나, 이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함.(제11조제2항)

라. 급수장치폐전 및 급수중지 신청을 전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함.(제22조)

마. 수도요금의 고지서를 주소지이외의 수도사업소에서도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2항)

바. 수전대장, 체납관리카드 등을 전산화하여, 전산화된 수전대장, 체납관리카드를 공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오납금처리부 및 과오납금(환부,충당)통지서, 검침부의 보존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제35조, 제36조 및 별지39호, 제38호 및 제41호서식)

사. 조례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계량기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자연재해의 범위 및 파손정도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62조)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40호

서울당산동임대아파트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446호(2001.12.31)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영등포구 당산동 임대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명 : 서울당산동 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도시개발공사 사장 도명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5호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3가 2-4호
4. 사업계획 승인 내역

○서울당산동 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 승인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 고
	당 초	변 경	
①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3가 2-4호		변경없음
② 대지면적(㎡)	9,568.40		변경없음
③ 건축면적(㎡)	3,667.92		변경없음
④ 건축연면적(㎡)	28,106.15		변경없음
⑤ 건폐율(%)	38.33		변경없음
⑥ 용적율(%)	233.70		변경없음
⑦ 사업비(천원) (국민주택자금)	27,941,657 (1,140,000)	27,941,657 (9,240,000)	
⑧ 주택규모 (국민임대)	아파트 2개동 200세대 (지하1층 지상20~23층) ·59㎡ : 38세대 ·84㎡(B): 58세대 ·84㎡(A) : 68세대 ·84㎡(C): 36세대		변경없음
⑨ 사업기간	2002. 3 ~ 2004.12		변경없음
⑩ 부대복리시설현황	·청소년시설 : 1,190.57㎡ ·노인정 : 71.92㎡ ·관리실 : 100.57㎡ ·입주자회의실 : 19.62㎡ ·어린이놀이터 : 403.713㎡ ·전기,펌프,MCC실 : 509.84㎡ ·주차장 : 236대(건물자주식 : 228,옥외 :8대)		변경없음
⑪ 공동저수시설	·지하저수조 : 350톤 ·고가수조 : 8톤		변경없음

※ 변경사유 : 사업비(자금계획)에서 국민주택자금 누락 분 반영

5.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도시개발공사 건축계획처(☎3410-719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4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업무설비)의시행자 지정(변경)및실시계획인가(변경)

1. 건설부고시 제1호('84. 1.9)로 도시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 -87호('98. 3.23)로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945호(2000.12.29)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96호(2001. 4. 6)로 고시한 다음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업무설비 : 도매센타 및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변경) 및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의제처리하고 도시계획법 제59조제6항 및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02-3707-8275) 및 서초구청 도시정비과(☎02-570-638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초구 양재동 215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업무설비:도매센타 및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2) 명칭 : 양재동 도매센타

다. 사업시행의 면적 : 28,972.30㎡[대지면적 28,404.93㎡, 공공시설(도로) 567.37㎡]

라. 사업시행의 규모 : 지하3층/지상19층 연면적 160,114.35㎡

구 분	층 수	연 면 적	비 고
변 경 전	지하5층 / 지상 19층	160,114.35㎡	
변 경 후	지하3층 / 지상 19층	160,114.35㎡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 분	성 명	주 소	비 고
변 경 전	금호산업(주) 고속사업부 대표이사 남상채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9-1	
변 경 후	주식회사 인평 대표이사 박춘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1-9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1. 4. 2 ~ 2005. 4.30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소재지번	사용할 토지		건물 내역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지목	면적(㎡)	물건종류	구조	연면적(㎡)	토지	건물
서초구 양재동 215	대	28,972.3	건물 7개동	철근콘크리트조외 3	13,565.67	해당없음	해당없음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구 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변경전	토지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9-1	금호산업(주)	중구 을지로2가 181	(주)한국외환은행	
	건물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변경후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1-9	(주)인평	해당없음	해당없음	
	건물	상 동	상 동	해당없음	해당없음	

자.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소재지번	지목	지적내역	비 고
서초구 양재동 215번지	대	○ 공공시설(도로) 설치 - 폭 : 3m - 연장 : 약 189.62m - 면적 : 567.37㎡	- 전면 20m 도로변 설치 - 공공시설(도로)은 사용승인신청전까지 도로관리청에 무상귀속

차. 기타사항

서울특별시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

건설부고시 제1978-393호('78.12.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1980-403호('80.12. 6)로 지적승인되어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02-492호('02.11. 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작성을 위해 공람공고한『신길로~도림로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 신길동321-13 (신길로)~ 도림동263-17(도림로)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사업의 명칭 : 신길로~도림로간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규모 : 폭 30m, 연장40m

라.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성명 : 서울특별시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3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시민열람 및 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토목과(☎670-3405)에 관계도면과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 명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특별시장

사 업 의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 업 시 행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321-22~263-84

물건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신길동 321-22	대	113		이진수	신길동 321-13	㈜제일은행	중구충무로1가53-1	근저당
2	신길동 263-83	대	92		전순구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초원상원(아105동601호			
3	신길동 263-84	대	90		김치용	종로구 충신동 25-12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 명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울특별시장

사 업 의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 업 시 행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321-13~263-17

물건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전)	구조	용도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신길3동 321-13	철근con'c/ 평옥개	점포	53.49	이진수	신길321-13	㈜제일은행	중구 충무로1가 53-1	지층
			점포	106.00					1
			점포	106.00					2
			옥탑	17.00					3
			수도	1식					
2	신길3동 263-18	연와조/ 평옥개	주택. 근생	55.00	전순구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초원 상원아파트 105동601호			1층
			창고	7.00					1층
			대문	1식					1층
			수도	1식					1층
3	신길3동 263-17	철근con'c /평옥개	창고	26.38	김치룡	종로구 충신동 25-12			지층
			주택 점포	92.00					1층
			창고	92.00					2층
			주택	92.00					3층
			대문	1식					1층
			수도	1식					1층

영 업 권 조 서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 명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울특별시장
사 업 의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 업 시 행 위 치 : 영등포구 도림동 170-3~186-8
신길동321-13~263-18

물건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상 호 명	업종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신길동321-13	영업권	한보당	소매업	심용진	신길동 321-13	1층
2		영업권	1001신길점	소매업	심용진	상동	1층
3		영업권	한보인쇄		심용진	상동	지하층
4		영업권	신형제철물건재	소매업	장칠성	상동	1층
5		영업권	지명건축사무소	서비스	이희원	상동	2층
6		영업권	무용교습소		박수현	상동	2층
7	신길동263-18	영업권	명문암	천우종	정영갑	신길동 263-18	1층
8		영업권	형제정육점	식육판매	권남규	상동	1층
9		영업권	유명흑염소	가공업	유시명	상동	1층
10	신길동263-17	영업권	한솔모드		강문순	신길동 263-17	1층
11		영업권	한일정육점	식육판매	이정순	상동	1층
12		영업권	신풍흑염소	가공업	여상봉	상동	1층
13		영업권	창고	창고	최영환	신길동 263-42	2층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작성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83호(2000.10. 6)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어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00-89(2000.11.17)호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02-469(2002.11.15)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작성을 위해 공람공고한 『신도림역~영등포역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1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 도림동170-3호~도림동186-8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사업의 명칭 : 신도림역 ~ 영등포역간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규모 : 폭20m, 연장110m

라.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성명 : 서울특별시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3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시민열람 및 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토목과(☎670-3405)에 관계 도면과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 명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울특별시장
사 업 의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 업 시 행 위 치 : 영등포구 도림동 170-3~186-8

물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실제 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도림동 170-6	대	1	주택	유가동	도림동 172-2	도림2동 새마을금고	영등포구 도림2동 156-4	근저당
2	도림동 170-5	대	16	주택	유가동	도림동 172-2	소사신용 협동조합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25-19	근저당
3	도림동 171-1	대	5	도로	유가련	도림동 172-2			
4	도림동 171-4	대	35	주택	유가동	도림동 172-2	도림2동 새마을금고	영등포구 도림2동 156-4	근저당
5	도림동 172-1	대	39	주택	김현우	용산구 이태원동 56-9 시장아파트 304호			
6	도림동 175-1	대	40	주택	권경택	도림동 175			
7	도림동 176-18	대	47	주택	홍재훈외6인	도림동 159-27			
8	도림동 186-46	대	52	주택	박영근	도림동 205-44	도림2동 새마을금고	영등포구 도림2동 156-4	근저당
9	도림동 186-47	대	79	주택	송재호	영등포구 도림동 186-5	도림2동 새마을금고	영등포구 도림2동 156-4	근저당
10	도림동 186-48	대	66	주택	임애란	구로구 구로동 717-27 동진빌라501호	농협중앙회	중구 충정로 1가 75 (신길동지점)	근저당

토 지 조 서

물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실제 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	도림동 186-49	대	16	도로	국(재무부)				
12	도림동 187-100	대	24	주택	추교태 김창수	도림동 217-5, 도림동 187-42	도림2동 새마을금고	영등포구 도림2동 156-4	근저당
13	도림동 187-101	대	38	주택	이용선	신길동 305 우성a 101동101호			
14	도림동 187-102	대	41	주택	박병호	도봉구 미아동 375-11			
15	도림동 187-85	대	26	주택	김창수	도림동 187-42	한국무진㈜	중구 필동2가 25	저당권
16	도림동 187-86	대	46	주택	추교태	도림동 187-43			
17	도림동 187-98	대	65	주택	박연웅	영등포구 신길동 3881			
18	도림동 187-99	대	18	주택	김창수	도림동 187-42	한국무진㈜	중구 필동2가 25	근저당
19	도림동 206-6	대	69	주택	이영희	영등포동 5가 42-42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
20	도림동 206-7	대	49	주택	신동우	영등포구 도림동 206-4	도림2동 새마을금고	영등포구 도림2동 156-4	근저당
21	도림동 208-5	대	23	주택	윤승영 영등포구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문촌마을 207-901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 명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울특별시장
사 업 의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 업 시 행 위 치 : 영등포구 도림동 170-3~186-8

물건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전)	구조	용도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도림동 170-3	스라브/벽돌	점포	105.27	24.00	유가동	도림동 171-2	소사신용협동조합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4-3 삼익a206-405	1층
			수도		1식					
			가스		1식					
2	도림동 170-2 도림동 171-2	스라브/벽돌	점포	108.33	32.00	유가동	도림동 170-3	도림2동 새마을금고	도림2동 156-4	1층
			점포	108.33	32.00					2층
			주택	72.60	32.00					3층
3	도림동 172	철콘조	점포	162.51	35.00	김현우	용산구 이태원동 56-9시장a 304호			1층
			주택	162.51	35.00					2층
			가스		1식					
4	도림동 175	철콘조	점포	80.14	33.00	권경택	도림동 175			1층
			주택	52.75	33.00					2층
			옥탑		2.00					추가
			가스		1식					

물 건 조 서

물건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전)	구조	용도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5	도림동 176-9	지하주차장 출입구	출입구		1식	도림시장㈜	도림동 176-1			1층
		썬라이트/ 철재	비가리		1식					추가
6	도림동 176-9	지주, 가로형	간판		1식	이상선	도림동 176-1			추가
7	도림동 186-1,2	철콘조	점포	92.26	58.00	박애숙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 기자촌a 135-2202			1층
			점포	92.26	53.00					2층
			주택	92.26	53.00					
8	도림동 186-5	철콘조	점포	125.39	71.00	송재호	도림동 186-5	도림2동 새마을금고	도림2동 156-4	1층
			주택	125.39	67.00					2층
			수도		1식					
9	도림동 186-6	목조/ 와즙	점포	46.28	59.00	임애란	구로동 717-27 동진빌라501	농협중앙회	중구 충정로 1가 75 (신길동지점)	1층
		기와/ 블록	화장실		2.00					화장실
		대문			1식					
		정화조			1식					
10	도림동 187-39	스레트/ 블록	점포	52.89	97.00	박연웅	대림3동686-1			1층
			옥탑		12.00					2층
			가스		1식					

물 건 조 서

물건번호	소재지 지번 (분할전)	구조	용도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	도림동 187-42	철근, 연와조	창고	90.98	25.00	김창수	도림동 187-42	한국무진㈜	중구 저동2가 25	지1층
			점포	229.72	25.00					1층
			주택	220.73	26.00					2층
			옥탑	16.51	2.00					옥탑
			수목		1식					
			수도		1식					
12	도림동 187-43	철근, 연와조	점포	219.74	30.00	추교태	도림동 217-5	도림2동 새마을금고	도림2동 156-4	1층
			점포	215.24	31.00					2층
			주택	11.21	2.00					옥탑
13	도림동 187-11	스라브/ 벽돌	점포	52.33	56.00	이용선	도림동 187-3			1층
			점포	52.33	59.00					2층
			주택		22					옥탑
			가스		1식					
14	도림동 187-64	스라브/ 벽돌	점포	57.55	60	박병호	도봉구 미아동 375-11			1층
			주택	57.55	64					
15	도림동 206-1	세멘 블럭조	점포	95.87	53	이영희	영등포동 5가 42-42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택영등포 지원센타)	
			창고	46.61						
16	도림동 208-2	스라브/ 벽돌	주택	96.36	8.00	윤승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문촌마을 207-901			1층

영 업 권 조 서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 명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울특별시장
사 업 의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 업 시 행 위 치 : 영등포구 도림동 170-3~186-8

물건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상 호 명	업종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도림동 170-3	영업권	영신반점	일반음식점	유가동	도림동 171-2	
2	도림동 171-2	영업권	우성커피숍	일반음식점	조종순	도림동 171-2	
3	도림동 171-2	영업권	삼색애드	인쇄업	이양진	인천시 남구 주안동 35-41 금성마을 3-401	소유자변경
4	도림동 172	영업권	게임파워	오락실	이용식	도림동237-6	
5	도림동 172	영업권	삼성판매센터	전자제품소매	정호연	영등포동 647-1 대우드림타운 202-1101	
6	도림동 172	영업권	하얀풍차	휴게음식점	이종협	도림동 193 피닉스오피스텔 302	
7	도리동 175	영업권	한우정육점, 담배	정육판매, 담배 소매	이문자	구로구 오류동 108-84 록지아트빌라 105-202	업종추가
8	도림동 175	영업권	토크쇼	간이주점	이봉애	광명시 광명동 124-8 한양하인즈빌라 201	
9	도릳동 186-2	영업권	도림다방	다방	김준천	구로구 오류동 205-8	
10	도림동 186-2	영업권	천우지물	소매업	서성남	서초구 방배동 846-1 조공a A-104	
11	도림동 186-2	영업권	만경당	소매업	정상익	도림동247-16	
12	도림동 186-2	영업권	까꼬뽀꼬	미용업	박성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92-7 한주타운 B-403	
13	도림동 186-2	영업권	애림사	의류소매업	조연호	신길동 368 건영아파트 나-204	
14	도림동 186-5	영업권	호남식당	일반음식점	서춘심	도림동 186-5	성명정정
15	도림동 186-5	영업권	대도의류백화점	의류소매업	송재호	도림동 186-5	
16	도림동 186-5	영업권	원조양념치킨	치킨판매	이양숙	도림동 186-5	

영 업 권 조 서

물건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상 호 명	업종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7	도림동 186-6	영업권	신도OA사무기	도소매, 사무기기	안규삼	도림동 186-6	
18	도림동 186-6	영업권	창수당	귀금속판매	하지영	도림동239-5	
19	도림동 186-6	영업권	인력시장	기타	김용호	도림동 186-6	
20	도림동 187-11	영업권	푸른별	간이음식업	이정순	양천구신정동1157-22	
21	도림동 187-11	영업권	절	기타	홍순관	도림동 187-11	무속인
22	도림동 187-11	영업권	꿈도리 만화	기타	송영구	도림동162-18	
23	도림동 187-39	영업권	도림화원	소매업	이태희	도림동 187-39	
24	도림동 187-39	영업권	명금당	서비스	오점숙	도림동 187-39	
25	도림동 187-39	영업권	영성사	제조,양복	최종태	도림동172	
26	도림동 187-39	영업권	하이트광장	주류판매	김정숙	도림동 187-39	
27	도림동 187-42	영업권	명성식품	유통업	안행환	도림동 187-42	냉동창고
28	도림동 187-43	영업권	문구완구 할인매점	소매업	장인숙	구로구 구로동 1267 신도림 태영타운 103-2402	
29	도림동 187-43	영업권	21세기 빨래방	세탁업	정길전	도림동 187-43	
30	도림동 187-43	영업권	보람식품	유통업	안재호	도림동 187-43	냉동창고
31	도림동 187-64	영업권	은하이용원	이용업	최남임	도림동 221-1 도림청구아파트 101-1109	
32	도림동 187-64	영업권	정제약국	의약소매업	노춘자	대림동 785-1 현대아파트 102-2001	
33	도림동 206-1	영업권	심인포장마차	기타	하춘순	도림동 206-1	
34	도림동 206-1	영업권	덕이네식당	간이음식업	김복순	도림동187-5	
35	도림동 206-1	영업권	옷수선	서비스	성명옥	도림동 206-1	
36	도림동 206-1	영업권	잉글랜드	소매업	변용희	도림동 206-1	
37	도림동 206-1	영업권	루디아	소매업	김영자	도림동 206-1	
38	도림동 208-2	영업권	동방소금구이	일반음식점	채은옥	도림동 208-2	
39	도림동 208-2	영업권	도림세탁	세탁업	김응하	도림동 208-2	
40	도림동 208-2	영업권	일성당	소매업	김형완	도림동250-7	
41	도림동 208-2	영업권	도일건축	세탁업	이연희	신길동205-14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4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서울특별시고시 제316호(1997.10. 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성북구공고 제2002-456호(2002.11.27)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위한 공람공고한 「보국문길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성북구 정릉동 161-17~420-3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 보국문길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도로확장 폭15m→20m, 연장 200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성북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부터 2006.12.31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별항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항

아. 도시계획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자.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북구청 건설관리과(☎ 920-3400~3)와 토목과(☎ 920-3405~8)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명 : 서울특별시장
사업시행자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사업의 종류 : 보국문길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주소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정릉동 420-1	전	60	60		김성구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68				
2	정릉동 420-51	전	3	3		김경숙	서울 성북구 돈암동 300				
3	정릉동 420-52	대	17	17		김용득	서울 성북구 정릉동 420-25				
4	정릉동 416-86	대	17	17		최선화	서울 성북구 정릉동 416-1호				
5	정릉동 416-85	대	42	42		박용평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35서경빌라 301호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근저당	
6	정릉동 416-84	대	39	39		이절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416-4	국민은행	서울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7	정릉동 416-83	대	14	14		안희정	서울 성북구 정릉동 416-7				
8	정릉동 161-38	대	126	126		성하철 정수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9 한양아파트 31동 1201호 〃	기아자동차정릉판매(주)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	성북구 정릉동 161-17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6-13 제일빌딩 15층	근저당 근저당	
9	정릉동 164-83	도로	10	10		재무부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주소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0	정릉동 164-79	대	13	13		정릉2동 새마을금고 임춘환	성북구 정릉동 44-6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26 문촌마을 1908동 605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	
11	정릉동 414-35	대	20	20		정릉2동새마을금고	성북구 정릉동 966-126	새마을 금고연합회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3	근저당	
12	정릉동 414-34	대	65	65		김문학	경기 연천군 미산면 삼화리 277-1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	
13	정릉동 414-33	도로	8	8		최교식	서울 성북구 정릉동 414-3호				
14	정릉동 414-22	대	1	1		최교식	서울 성북구 정릉동 414-3				
15	정릉동 414-32	도로	2	2		최교식	서울 성북구 정릉동 414-3				
16	정릉동 414-21	도로	43	43		정보통신부					
17	정릉동 414-31	대	69	69		정부통신부					
18	정릉동 414-30	도로	22	22		윤정택	종로구 운니동 34	한국 주택금고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43-8	근저당	
19	정릉동 413-41	대	42	42		이형규	성북구 정릉동 412-22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	
20	정릉동 413-30	대	1	1		양정옥	서울 성북구 정릉동 413-14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주소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21	정릉동 413-40	대	3	3		안영배	서울 성북구 길음동 620-67	정릉2동 새마을금고	서울 성북구 정릉동 414-6	근저당	
22	정릉동 413-39	대	20	20		안영배	서울 길음동 620-67				
23	정릉동 413-28	대	2	2		정영섭	서울 성북구 정릉동 413-13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근저당	
24	정릉동 413-38	대	2	2		정영섭	서울 성북구 정릉동 413-13	영등포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세관 13410-1107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압류 근저당	
25	정릉동 413-37	대	15	15		이병권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8-9 화평빌라 비동 지상3층 403호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전세권	
26	정릉동 413-36	대	16	16		김경현	경기 양주군 양주읍 마전리 395-1	정미화, 노진호 유종숙 중소기업은행	강남구 역삼동 705-19 성북구 정릉동 413-10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가압류 전세권 근저당	
27	정릉동 413-24	대	3	3		윤병안	서울 성북구 정릉동 413-8				
28	정릉동 413-35	대	3	3		윤병안	서울 성북구 정릉동 413-8	한국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29	정릉동 413-34	대	15	15		윤을순	성북구 정릉동 809 중앙하이츠아파트 3-410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명 : 서울특별시장
사업시행자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사업의 종류 : 보국문길 도로확장공사

연번	물건지 주소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정릉동 413-09	건물(1층) 건물(2층)	벽돌조/ 슬래브	11 11	점포 점포	윤을순	서울 성북구 정릉동 809 정릉중앙하이츠(아) 3-410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2	정릉동 413-10	건물(1층) 건물(2층)	벽돌조/ 슬래브	7 7	점포 종교	김경현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마전리 395-1	정미화 노진호 유종숙 중소기업은행	강남구 역삼동 705-19 성북구 정릉동 413-10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가압류 전세권 근저당	
3	정릉동 413-12	건물(1층) 건물(2층)	시멘트 벽돌조 철근 콘크리트	18 18	주택 점포	이병권	서울서초구 양재동 208-9화평빌라 비동 지상3층 403호	경향 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전세권	
4	정릉동 413-15	건물	목조와즙	18	점포	안영배	성북구 길음동 620-67				
5	정릉동 413-16	건물(지하) 건물(1층) 건물(2층) 계단	철근 콘크리트	35 35 35 3	점포 점포 점포 계단	이형규	성북구 정릉동 412-22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6	정릉동 414-4 정릉동 414-4	건물(1층) 건물(2층) 담 장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세맨 브럭조	15 15 1식	점포 점포 담장	정보 통신부 정보 통신부					

물 건 조 서

연번	물건지 주소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7	정릉동 414-10	건물(자하) 건물(1층) 건물(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	32 32 32 6	공가 점포 점포 옥탑	김문학	경기 연천군 미산면 삼화리 277-1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8	정릉동 414-6	건물(1층) 건물(2층)	벽돌조/ 슬래브	26 26	점포 점포	정릉2동 새마을 금고	성북구 정릉동 966-126	새마을금고 연합회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3	근저당	
9	정릉동 416-7	건물(1층) 건물(2층) 건물(3층) 화장실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세멘브럭조	3 3 3 1	점포 점포 주택 화장실	안희정	성북구 정릉동 416-7				
10	정릉동 416-4	화장실 건물(지하) 건물(1층) 건물(2층) 건물(3층) 옥탑 차고	세멘브럭조 철근콘크리트	1 12 12 18 18 3 2	화장실 점포 점포 점포 점포 사무실 차고	이절자	성북구 정릉동 416-4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	
11	정릉동 416-2	건물(지하) 건물(1층) 건물(2층) 건물(3층) 차고	연화조/슬래브	16 16 16 16 6	점포 점포 점포 점포 차고	박용평	정릉동 266-35 서경빌라 301	서재령 외환은행	돈암동609-1 한진(아)204-1204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전세권 근저당	
12	정릉동 420-07	건물(1층)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11 11 3	점포 점포 화장실	김용득	정릉동 420-25				
13	정릉동 416-1	건물(1층)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	11 11	점포 주거	최선화	정릉동 416-1				
14	정릉동 414-10	지장물	철대문	1식	대문	안영배	길음동 620-67				
15	정릉동 413-15	지장물	철대문	1식	대문	안영배	길음동 620-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47호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지정

문화재보호법 제55조·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를 지정하고, 동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 지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문화재 지정내용

지정종별 (번 호)	지정명칭	수량	규 모	재 질	연 대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주소)	소유자 / 관리자
유형문화재 제160호	봉은사목사천왕입상 (奉恩寺木四天王立像)	4軀	- 유형 제160-1호 (동방 지국천왕상) ·總高 2.07m ·頭高 0.46m ·眼幅 0.278m ·足長 0.39m - 유형 제160-2호 (서방 광목천왕상) ·總高 2.112m ·頭高 0.466m ·眼幅 0.288m ·足長 0.38m - 유형 제160-3호 (남방 증장천왕상) ·總高 2.074m ·頭高 0.544m ·眼幅 0.288m ·足長 0.428m - 유형 제160-4호 (북방 다문천왕상) ·總高 2.333m ·頭高 0.436m ·眼幅 0.288m ·足長 0.374m	木佛	1746년 (영조22년)	강남구 삼성동 73 봉은사 진여문 내	소유자: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관리자: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지정종별 (번 호)	지정명칭	수량	규 모	재 질	연 대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주소)	소유자 관리자
유형문화재 제161호	금선사신중탱화 (金仙寺神衆幀畵)	1幅	- 전체화면: ·가로 82.7cm×세로 130cm - 그림부분: ·가로 81.5cm×세로 120cm - 畵記面 ·가로 47cm ×세로 6.3cm	견본채색	1887년 (고종24년)	종로구 구기동 196-2 금선사 대웅전 내	대한불교 조계종 금선사 대한불교 조계종 금선사
유형문화재 제162호	금동보살좌상 (金銅菩薩坐像)	1軀	- 總高 58.8cm	금동불	고려말~ 조선초 추정	종로구 신문로2가 2-1 서울역사박물관 내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유형문화재 제163호	간평의 (簡平儀)	1点	- 지름 : 25.5㎝ - 무게 : 1,804g	놋쇠	1850년대 추정	종로구 신문로2가 2-1 서울역사박물관 내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유형문화재 제164호	앙부일구 (仰釜日晷)	1点	- 크기 ·가로 3.1㎝×세로 7.2㎝× 높이 3.8㎝ - 무게 : 276g	옥돌	1908년 (융희2년)	종로구 신문로2가 2-1 서울역사박물관 내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유형문화재 제165호	조선본천하여지도 (朝鮮本天下輿地圖)	1軸	- 전체화면 ·가로 198.4cm× 세로 228.3cm - 지도부분 ·가로 183.5cm× 세로 154.1cm	견본채색	17세기 추정	종로구 신문로2가 2-1 서울역사박물관 내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2. 지정사유

가. 유형문화재 제160호 - 봉은사목사천왕입상(奉恩寺木四天王立像)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하늘의 중앙에 수미산이 있고, 그 산의 중턱에는 동, 서, 남, 북 각기 동방 지국천왕(東方 持國天王), 서방 광목천왕(西方 廣目天王), 남방 증장천왕(南方 曾長天王), 북방 다문천왕(北方 多聞天王) 등의 사천왕(四天王)이 거주하며 각자의 인간세계를 관장한다고 한다. 원래는 고대 인도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었으나 불교에 흡수되면서 온갖 惡과 鬼神들을 다스리며 佛法을 수호하는 護法의 존재가 되어 호세천왕(護世天王)이라고도 불리는 사천왕은 일반적으로 각 사찰의 天王門에 봉안되어 있는데 이는 惡을 사찰 문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현재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진여문(奉恩寺 眞如門) 안에 봉안되어 있는

이 사천왕상 4軀도 원래는 봉은사 진여문과 법왕루 사이에 있던 천왕문에 봉안되어 있었으나 천왕문 철거로 현재의 위치에 임시 봉안되게 되었다.

이 사천왕상은 복장물 기록에 따르면 1746년(영조 22년)에 조성되었는데 능창군 이씨(綾昌君 李氏: 宣祖의 7子인 仁城君의 증손)와 상궁 박필애(尙宮 朴弼愛) 등 궁중 관련 인물들이 발원·시주하여 조성되었다고 한다. 발원문에는 청양 장곡사 후불탱(1708년 작) 조성에 참여한 바 있는 首畵員 여찬(呂燦)을 비롯하여 성현(性賢)·계학(戒學)·정일(淨日)·해운(海雲)·민휘(敏輝)·만근(萬根)·지산(智訕) 등 이 사천왕상을 제작한 9명의 畵師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복장 조사 시 3軀의 사천왕상의 발원기와 기타 복장물 등이 분류되지 않고 섞여 각 상의 尊名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게 되었으나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사천왕 배치형식에 의해 볼 때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칼(현재 缺失)을 들고 있는 像이 동방 지국천왕상(東方 持國天王像), 긴 장대를 들고 있는 상이 서방 광목천왕상(西方 廣目天王像), 두 손에 용과 여의주를 들고 있는 상이 남방 증장천왕상(南方 曾長天王像), 비파를 들고 있는 상이 북방 다문천왕상(北方 多聞天王像)으로 추정된다.

東方 持國天王(Dhritarashtra)은 수미산 중심에서 동쪽으로 1천 유순(由旬) 떨어져 있는 지국천(持國天)의 현상성(賢上城)에서 건달바(乾達婆, Gandharva)와 비사사를 거느리고 동쪽 인간세계 사람들, 특히 국가와 국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국천왕을 묘사한 봉은사 東方 持國天王像은 寶冠에 甲冑를 걸치고 두 손을 배 앞부분에서 포개어 劍을 집고 서 있는 모습인데, 검은 멸실되었다. 부릅뜬 눈, 구불구불하게 표현된 눈썹과 턱수염 등에 神將으로서의 용맹함이 잘 나타나 있다.

西方 廣目天王(Virupaksha)은 수미산 중심에서 서쪽으로 1천 유순(由旬) 떨어진 곳에 있는 광목천(廣目天)의 주라선견성(周羅善見城)에서 용왕(龍王)과 부단나(富單那) 神衆을 거느리며 서쪽 인간세계를 수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청정한 天眼으로 인간들을 항상 관찰하고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이러한 廣目天王을 묘사한 西方 廣目天王像은 다리를 약간 벌리고 오른손으로 긴 장대를 들고 서 있는데, 옛날 사진에 의하면 그 위에 창날이 꽂혀 있었다고 한다. 구불구불한 수염이 표현되었으나 입을 약간 벌리고 눈을 둥그렇게 뜬 모습이 친근한 인상을 준다.

사천왕 중 가장 높고 대표적인 天王인 北方 多聞天王(Vaisravana)은 수미산 중심에서 북쪽으로 1천 유순(由旬) 떨어진 곳에 있는 다문천(多聞天)의 주라선견성(周羅善見城)에서 야차(夜叉)와 나찰(羅刹) 신장을 거느리고 북쪽 인간세계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미산 북방을 지키면서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서 그 이름이 유래된 북방 다문천왕은 財物과 福德을 주관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多聞天王을 묘사한 北方 多聞天王像은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

린 자세로 약간 우측을 바라보면서 두 손으로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머리에는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寶冠을 쓰고 甲冑를 걸치고 있다. 사각형에 가까운 넓적한 얼굴에 오똑한 콧날과 半開한 가는 눈, 윗니가 삐죽 튀어나오게 표현된 입 등이 특징적이다.

南方 曾長天王(Virudhaka)는 수미산 중심에서 남쪽으로 1천 유순(由旬) 떨어진 곳에 있는 증장천(增長天)의 선견성(善見城)에서 권속으로 구반다(鳩槃茶)와 프레타(薛荔多) 신장을 거느리고 남쪽 인간세계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天王의 이름은 자신의 威德을 늘이고 키워서(增長), 만물을 소생시키는 덕을 베풀겠다는 誓願을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增長天王을 묘사한 南方 增長天王像은 상체를 약간 왼쪽으로 기울인 채 머리에는 보관 대신 투구를 쓰고 있고 두 손은 아래로 내려 오른손에는 용, 왼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있다. 적색으로 표현된 얼굴, 부릅뜬 눈, 구불구불한 수염, 꾹 다문 입 등은 수호신장으로서의 사천왕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데, 특히 赤色을 띤 얼굴과 성난 듯 부릅뜬 눈은 남방 증장천왕상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이 4軀의 四天王像은 기본적으로 커다란 통나무를 깎아 조각하고 부분적으로 돌출된 부분이나 추가해야 할 부분에는 따로 나무를 조각하여 몸체에 결합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특히 두 발이 그렇다. 현재 4軀의 像에는 古彩가 잘 남아 있다. 증장천왕상을 제외하고는 얼굴을 모두 흰색으로 칠했고, 갑옷과 보관 등은 붉은색, 녹색, 청색, 황색 등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채색했다.

봉은사목사천왕입상은 얼굴 크기와 비교하여 다소 작게 표현된 신체, 넙적하고 큰 얼굴, 세밀하고 정교하지만 다소 경직적으로 보이는 무늬들에서 18세기 중엽 전후 조각양식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위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봉은사 목사천왕입상은 첫째, 1746년이라는 조성연대가 분명하게 밝혀진 사천왕상으로서 18세기 중엽의 木造 불교조각 양식 연구에 중요한 사례가 된다는 점, 둘째 흙으로 조성된 보통의 사천왕상과는 달리 나무로 만든 木四天王立像으로서 서울지역에서는 희귀한 예에 속한다는 점, 셋째 다량의 복장 유물의 출토로 당시의 복장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 넷째 일부 持物(즉, 동방지국천왕상의 지물인 劍, 서방 광목천왕상의 지물인 장대 끝의 창날)이 없어진 것을 제외하고 원형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점 등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를 가진다.

나. 유형문화재 제161호 - 금선사신중탱화(金仙寺神衆幀畵)

현재 금선사 대웅전(金仙寺 大雄殿)의 좌측 벽에 봉안되어 있는 이 신중탱화는 1887년(고종 24년) 금어비구 금지(金魚比丘 金地), 출초비구 경순(出草比丘 景純), 편수비구 계준(片手比丘 啓俊) 등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신중탱화는 세로로 긴 화면에 제석(帝釋)과 위태천(韋駄天)을 각각 상부와 하부의 중심으로 하여 그 주위에 12軀의 眷屬을 배치한 상하 2단 도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상부에는 중앙에 제석(帝釋)이 크게

묘사되고 그 주위로 6명의 眷屬이 帝釋을 향하여 시립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제석은 원래 인도 고대 신화에서 태양신 또는 천둥·비를 관리하는 뇌정신(雷霆神)이었다가 불법을 수호하는 護世의 天神으로서 일찍 불교 교리 속에 통합된 신으로서 神衆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다. 도리천(忉利天)의 희견성(喜見城 ; 善見城이라고도 함)에 살면서 여러 天衆 및 四天王을 거느리고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보살이 쓰는 관을 쓰고 합장하거나 연꽃을 든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선사 신중탱화의 제석은 화려하게 장식된 보관(寶冠)을 쓰고 두 손으로 가볍게 백련(白蓮) 봉우리를 들고 있다. 얼굴모양은 사각형에 가깝게 넓고 복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세부 이목구비는 작고 가늘게 표현되었다. 둥근 깃의 붉은 옷 위에는 청색의 雲肩을 걸치고 있으며 소매에 걸쳐진 옷자락에는 새 날개 깃 모양의 장식이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옷 형태는 18,19세기 제석천의 가장 전형적인 복식이다. 제석천의 좌우로는 각기 해와 달이 표현된 보관을 쓰고 두 손에 홀을 든 日天子(제석천의 왼쪽)와 月天子(제석천의 오른쪽)가 표현되어 있는데 제석과 마찬가지로 짙은 녹색의 두광(頭光)을 지니고 제석 옆에 시립하고 있어 마치 三尊처럼 표현되었다. 日天子와 月天子의 위로는 如意와 연꽃, 복숭아 등 持物을 들고 있거나 생황을 연주하는 4軀의 동자가 묘사되어 있다.

하단부에는 중앙에 위태천(韋馱天)을 중심으로 천룡팔부중(天龍八部衆) 일부가 묘사되었다. 위태천은 원래 브라만교의 신으로서 시바 또는 火天 아그니의 아들로서 天軍의 대장 또는 여러 가지 惡을 없애주는 신으로 신앙되었는데 불교에서는 불법 수호의 신, 특히 가람 수호의 신으로 통한다. 보통은 몸에 甲冑를 걸치고 합장한 팔 위에 보검을 받든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 불화에서 韋馱天은 머리에 새 날개 깃 모양의 관을 쓰고 합장한 두 손에는 삼지창을 받들고 있다. 韋馱天의 주위에는 용왕과 산신, 활과 창을 든 신장 등 6구의 신장들이 호위하고 있다. 여기에 표현된 八部衆은 정통적인 八部衆과는 다른 모습의 神將들이어서 토속신들로 보인다.

붉은색과 감청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데, 두 색깔의 강한 대비로 주제가 명료하게 표현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佛畵는 14位의 제석·천룡 신중탱화로서 현존하는 동일 도상의 불화와 비교하여 보면 구성면에서 다소 단조롭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기 신중탱화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고 서울지역 사찰에 남아 있는 신중도 가운데 비교적 연대가 올라가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또한 위태천의 좌측 바탕천이 떨어져 나가고 그을음 등으로 화면이 약간 어둡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보존상태는 양호하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다. 유형문화재 제162호 - 금동보살좌상(金銅菩薩坐像)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이 불상은 높이가 58.8cm에 이르는 고려 말~조선 초 시기의 金銅菩薩坐像이다.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아담하며 균형잡힌 체구에 두 눈을 지그시 감아 깊은 명상에 잠긴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통통하게 살이 붙은 얼굴에는 입가에 약간 미소가 떠올라 있다. 이 불상의 경우 머리에서 늘어진 머리카락이 귀를 감아 내려와 어깨에서 한 번 매듭이 지어진 뒤 어깨 아래로 치렁치렁하게 늘어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머리카락 표현은 고려시대 불화를 비롯하여 고려후기 금동불좌상에 흔히 나타나는 형식으로 조선시대 불상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다.

着衣는 통견식(通肩式)으로 입고 그 위에 다시 넓은 숄과 같은 것을 걸친 특이한 모습이다. 通肩의 袈裟로 넓게 트여진 가슴에는 달개(영락:瓔珞) 장식이 화려한 목걸이를 걸치고 있다. 세 개의 瓔珞을 이어 연결하고 아래로 길게 술을 늘인 듯한 형태의 목걸이는 고려말에서 조선 전기 보살상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형태지만 이 불상에서는 그 형태가 정돈되어 있지 못하고 조각도 뚜렷하지 못하다. 목에는 三道가 뚜렷하게 표현되었고 넓게 트인 가슴 아래로는 평행으로 裙衣를 입었는데 그것을 묶은 리본형의 띠 매듭을 陰刻으로 표현하였다.

손은 작고 손가락 역시 가늘고 긴데 양 손목에는 팔목 안쪽에 연꽃 장식이 달린 팔찌를 차고 있다. 이 불상의 경우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들어 첫째와 셋째 손가락을 마주잡고 왼손은 배 부근에 대어 첫째와 셋째 손가락을 마주잡은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의 손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手印은 아미타여래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아미타불의 협시보살(脇侍菩薩)인 관음보살(觀音菩薩)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도 그러한 手印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불상은 아미타삼존(阿彌陀三尊)으로 조성된 상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여진다.

신체에 일부 손상이 있으나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鑄造가 다소 거친 편으로 오른쪽 소매 옆부분에는 주조공이 남아 있다. 앞부분은 改金이 많이 벗겨졌으나 뒤쪽에는 改金이 많이 남아 있다. 현재는 寶冠을 쓰고 있지 않으나 이마 위에 별도의 보관을 올려놓은 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보관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살상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머리 한 가운데에 높은 보계(寶髻)가 표현되지만 이 像에서는 그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寶髻를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불상은 고려시대 후기의 보살상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어깨 뒤로 걸쳐 넘긴 옷자락의 형식적인 옷 주름이나 무릎에 표현된 가로줄의 평행 옷자락 표현, 불룩한 배의 표현 등 부분적으로 형식화가 나타나고 있는 바 고려 후기 불상양식을 계승한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보살상으로 추정된다.

주조가 거칠고 다소 손상이 있긴 하지만 麗末鮮初의 불상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라. 유형문화재 제163호 - 간평의(簡平儀)

서울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간평의(簡平儀)는 시간과 天體曆을 살피는데 활용되는 과학유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다.

간평의는 1680년(康熙 19년) 중국에 들어온 서양선교사들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고 알려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조 때의 실학자 담헌 홍대용(湛軒 洪大容, 1731 ~1783)이 중국에 다녀온 후 1752년~1762년간에 일종의 私設 천문대로 만든 농수각(籠水閣) 내에 측관(測管)이란 儀器를 제작해 놓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실물은 전해지지 않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간평의라고 전해진다.

「평의(平儀)」는 지구의(地球儀)나 혼의(渾儀)와 같은 둥근 球 모양의 儀器(즉, 球儀)와는 달리 평평한 곳에 하늘을 투영한 儀器를 가리킨다.「간평의(簡平儀)」는 그러한 평의를 더욱 간편하게 만들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간평의는 원반모양으로 된 놋쇠판 앞·뒷면에 별자리와 24절기, 밤 시간의 5更, 1년간의 calender 등을 표시해놓았다. 앞면은 두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에 있는 것이 북반구 별자리와 赤位 약 52°부근까지의 남반구 별자리, 적도, 황도선 등을 새긴 천반(天盤)이고 그 위에 놓인 것이 지평선과 천중선 등을 표시한 지반(地盤)인데 지반의 일부분을 둥글게 오려내어 두 개의 판을 돌려 조합함으로써 별자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뒷면의 경우 시간, 24절기, calendar 다이얼 등이 표시된 원반 위에 12干支가 線刻되어 있는 지름 5.6cm의 원반이 올려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절기에 따라 밤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본 儀器의 구조는 1680년(康熙 19년)에 제작된 중국의 簡平儀와 유사한데, 특히 뒷면의 경우는 똑같다. 그러나 앞면의 경우 천반 중앙부위에 표시된 별자리 등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본 간평의는 지평선 정남에서의 항성(恒星)의 적위가 약 52°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漢陽에서 남중하는 별들을 관측할 수 있는 범위인 것을 고려할 때 그 제작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구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낸 첫 簡平儀 유물인데다 제작솜씨도 정밀하며천문학적, 과학사적 가치가 큰 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마. 유형문화재 제164호 - 앙부일구(仰釜日晷)

앙부일구(仰釜日晷)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해시계로 조선 세종(朝鮮 世宗) 때 처음 만들어진 이후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이 앙부일구는 가로 3.1㎝×세로 7.2㎝×높이 3.8㎝ 크기의 옥돌에 소형 나침반을 부착하여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반구형(半球形)인 해시계 면의 직경은 3cm이고 나침반의 직경은 1.9cm인데 나침반 주위에 24向이 표시되어 있다. 나침반과 일구 사이에「仰釜日晷」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고 해시계반 하단에는「北極高三十七度三十九分一十五秒」라고 篆刻되어 있는데 이는 이 해시계가 서울의 위도를 표준으로 하였음을 표시한 것이다. 또한 해시계반 내부에는 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 등의 시간과 시각선이 새겨져 있어 이 시계를 가지고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 범위 내의 시간측정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해시계

의 측면 양쪽에는 夏至에서 冬至까지의 절기가 표시되어 있고 밑면에는 제작연대(隆熙 2년)와 제작자 성명(姜文秀)이 새겨져 있다.

이 앙부일구는 시계의 생명인 시반(時盤)의 눈금새김이 정치하여 우리나라 해시계 제작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과학유물인 동시에 공예품으로서의 아름다움도 돋보이고 제작자와 제작연대 또한 확실하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바. 유형문화재 제165호 - 조선본천하여지도(朝鮮本天下輿地圖)

이 지도는 1594년(甲午 仲夏) 중국 명대(明代) 학자인 왕반(王泮)이 지문(識文)을 쓴 인쇄본 8폭『여지도(輿地圖)』를 저본(底本)으로 하여 제작한 채색필사본 지도이다.

이 지도는 상단 1/3 정도가 결실되었고 중단에는 중국(明), 조선, 일본, 류구(琉球 : 현 일본 오키나와縣) 등이 그려져 있으며 하단 우측에는 王泮의 識文과 성명 미상의 조선인이 지도제작의 경위를 쓴 발문(跋文)이 있다.

이 지도에는 제작연대가 明記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진왜란 후 1594년 제작된 왕반의『여지도(輿地圖)』를 기본도로 한 사실이 발문에서 확인되고, 1644년 멸망한 明을「天朝」라고 쓰고 있지만, 1658년(인조26년) 능성현(綾城縣)에서 능주(綾州)로 승격된 능주가 지도상에 표시된 데 비해 1672년(인조 40년) 정가산성(定架山城)의 邑名으로 처음 등장하는 칠곡(漆谷)은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지도는 빨라도 1594년 이후, 늦어도 1672년 이전에는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도에는 오늘날의 독도가 평산도(平山島)라는 명칭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우산도(于山島)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이며 그 위치가 울릉도 서쪽에 표시된 것은 1696년(숙종 22년) 안용복 사건 발생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다른 여지도와 마찬가지로 지도제작 당시 독도 지역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이다.

현재 17세기 동아시아 지도가 드문데다 제작자가 明나라의 지도를 그대로 모사하지 않고『대명관제(大明官制)』와『일통지(一統志)』를 참고하여 첨삭, 수정함으로써 王泮의『輿地圖』와는 다른 지도로 변모시켰고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그려진『輿地圖』에 우리나라 부분을 크게 덧붙여 그림으로써 제작당시의 우리나라 지리정보를 상세히 제공해준다는 점 등에서 이 지도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3. 지정일자 : 2002.12.26(목)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435호

다단계판매업자등록사항변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등록변경사항
○신고인
- 등록번호 : 제344호
- 상호 : (주)바이테크노스
- 대표자 : 김정한

○변경내용
- 변경전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26 삼일프라자618호
  • 전화 : 02-567-8744
- 변경후
  • 소재지 : 대전시 중구 오류동 154-4 센트리아오피스텔 19층 10호~14호
  • 전화 : (042)531-7877

나. 변경일자 : 2002년 12월 17일
다. 변경사유 : 주된 사업장 이전
라. 변경내용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447호

다단계판매업자등록사항변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등록사항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등록변경사항
○신고인
- 등록번호 : 제59호
- 상호 : (주)생명에너지넷
- 대표자 : 서석환

○변경내용
- 변경전
  • 상호 : 동남훼밀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6-18 대원빌딩 12층
  • 전화 : 02-6285-5558
- 변경후
  • 상호 : 생명에너지넷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67 케이와이빌딩 2층
  • 전화 : 02-552-6990

나. 변경일자 : 2002년 12월 20일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02)3707-93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436호

일반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업종 및 등록번호 : 건축공사업-01-1564
○상호 : 무헌종합건설(주)
○대표자 : 임홍석
○법인등록번호 : 110111-2652900
○소재지(전화)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99-3(☎3664-1990)
○경력임원 : 박종숙(580222-2******)
○등록일 : 2002.12.18

○업종 및 등록번호 : 건축공사업-01-1565
○상호 : (주)네모종합건설
○대표자 : 박윤석
○법인등록번호 : 110111-2655772
○소재지(전화)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8(☎732-4222)
○경력임원 : 현종남(340809-1******)
○등록일 : 2002.12.18

◉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438호

전기공사업법위반업체등록취소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다음의 전기공사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공사업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등록번호 : 제서울-02555호
○업체명 : (주)삼원일렉테크
○대표자 : 김선대
○소재지 : 영등포구 대림동 775-1
○위반내용 : 전기공사업법제4조제2항 (기술인력 1인 부족)
○행정처분 : 등록취소
○등록취소일 : 2002.12.18

◉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439호

전력시설물의감리업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종 류	등록일자
제서울S-1-259호	(주)기술사사무소 아이비에스	손호섭	570711-1******	송파구 가락동 10-4	종합감리업	2002.12.17
제서울S-1-260호	(주)한진SK	최경림	430613-1******	서초구 서초동 1571-12	종합감리업	2002.12.17
제서울S-2-181호	(주)고려종합 건축사사무소	박동규	531102-1******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8	전문감리업	2002.12.17
제서울S-2-182호	한빛기술단	이귀남	520510-1******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7-411	전문감리업	2002.12.17

◉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442호

보육교사교육원소재지및명칭변경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교육원 훈련시설 (소재지,명칭,대표자)변경신청서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보육정원 : 주간 100명
○변경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소재지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134-44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1-1
명 칭	칼빈보육교사교육원	동작보육교사교육원
대표자	이 주 영	나 영 자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가정복지담당관(☎3707-92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443호

시의회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구 분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조례안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 (조직제도담당관)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 및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444호

일반건설업등록반납

일반건설업의 등록 반납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상호 : 에이랜드(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2645567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5
○대표자 : 정규수
○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01-0416
○반납사유 : 자진반납
○반납수리일자 : 2002.12.18

○상호 : 에이랜드(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2645567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5
○대표자 : 정규수
○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1547
○반납사유 : 자진반납
○반납수리일자 : 2002.12.18

○상호 : (주)경원씨앤엠
○법인등록번호 : 110111-0645337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20
○대표자 : 강석형, 강문석
○업종 및 등록번호 : 건축공사업(제3호)
○반납사유 : 자진반납
○반납수리일자 : 2002.12.18

○상호 : (주)세영코리아
○법인등록번호 : 110111-1225261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3
○대표자 : 하장득
○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01-0398
○반납사유 : 자진반납
○반납수리일자 : 2002.12.18

◉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446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다단계판매업자 시정권고공시송달

1. 다음 다단계판매업자의 위반행위(문서반송-불만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설비부족 방치)에 대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니, 시정권고 수락여부를 통지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없을 경우 동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2. 이 공시송달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02-6321-40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시정권고 대상업체 및 위반내역

대 상 업 체			민원인	위 반 행 위 (관련법규)	비 고
상 호(등록번호)	소 재 지	대표자			
탑씨엠에스(487)	강남구 논현동 213-10 중앙빌딩 3층	정선화	박소자	환불처리 지연 (방문판매등에관한법 제17·18조) 불만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설비부족 방치 (방문판매등에관한법 제23조)	
올투게더(470)	강남구 역삼동 158-3 건영빌딩 2층	김홍규	황남열		
엔에프아이(117)	강남구 역삼동 682-17호	소준호	오진영		
청정나라(352)	강남구 논현동 181-6 우성빌딩 2층	서정자	장순자 외2건 이영순 이정숙		
보아스컴(205)	강남구 논현동 210-1 삼원빌딩 5층	방태준	정재훈		
포드림넷(412)	강서구 등촌동 512-15 경성한신빌딩7층	박성원	백순자외1건 김영애외2건		
대영알비지네트워크(14)	강남구 삼성동 157-8 엘지트윈텔 302	송현우	박영희외13명		
엔이떠블유라이프(334)	강동구 둔촌동 486-7호 3층	김미영	유영재		
액트코리아(486)	서초구 서초동 39-8호 2층	지봉준	성소민		
한겨레쇼핑(395)	강남구 대치동 942-17 보성빌딩5층	심성룡	이기선		
인테크인터내셔날(287)	강남구 논현동 120 건우빌딩 6층	박희봉	장석찬		
이에프인터내셔날(458)	중구 필동1가 43-1호 동화빌딩 208	김진복	이월심		
허브닥터인터내셔널(437)	중구 쌍림동 22-1 벽산빌딩 13층 1호	김성우	권정순외12명 김영옥		
드림인라이프(475)	강남구 역삼동 823-30 라인빌딩 8층	노춘근	이월심		
굿라이프넷(423)	강남구 역삼동 751-13호 3층	차성현	최영미		
엔에스케이나사 생명(456)	중구 신당5동 127-7 국일빌딩 4층	박후남	조남술외2건		
성공자의모임(50)	종로구 경운동 898-4 고합빌딩 4층	이경탁	이문주외11건		
파워플러스원(484)	강남구 역삼동 772 동영빌딩 8층	류지태	김희숙		

나. 시정권고 사항

○상기 환불민원에 대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환불처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소비자보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 변경(소재지 등)이 있는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서울시(소비자보호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를 즉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 제23조제1항제6조)

다. 시정권고 수락여부 통지기한 : 2003. 1. 8일까지.

◉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448호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행정처분을위한청문통지서공시송달

다음의 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제2항3호를 위반(자격증 대여)한 사실이 있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를 방문전달 및 우편 송달하였으나, 당사자가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주하지(이사감)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통지서를 공시송달 하니 기한 내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인중개사자격취소			
2.당사자	상호 및 소재지	성명 : 문의호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2동103-214			
3.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제2항3호(자격증 대여)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공인중개사자격취소			
5.법 적 근 거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제2항3호 및 같은법 제24조			
6.청 문		기 관 명	서울특별시	담당부서명	지적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일 시	2003년 01월 14일(화) 16:00까지		
		장 소	서울시청 지적과(서소문별관 2동 404호)		
		주 재 자	소속 및 직급	토지조사팀장(사무관)	
			성 명	함 병 남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지적과(☎3707-8054 김복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449호

다단계판매업자휴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상호 : (주)다이아인터(등록번호 제402호)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9-2 역선빌딩 502호
3. 대표자 : 장석원
4. 휴업기간 : 2002.12.23 - 2003. 3.31.
5. 휴업사유 : 사업부진 및 반품사태

◉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450호

전력시설물의설계·감리업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종 류	등록일자
제서울S-1-261호	(주)한국이에프티 엔지니어링	하성철 박동규	110111-1832850	양천구신정6동 318-6	종합감리업	02.12.21
제서울S-2-183호	(주)알파엔지니어링	이등구	110111-0818207	구로구 구로동 212-16	전문감리업	02.12.21
제서울S-2-184호	(주)다나엔지니어링	원정묵	110111-2149006	강남구 역삼동 724-41	전문감리업	02.12.21
제서울S-2-185호	(주)태협엔지니어링	한광현	110111-1230434	강남구 역삼동 836	전문감리업	02.12.21
제서울E-2-232호	(주)알파엔지니어링	이등구	110111-0818207	구로구 구로동 212-16	전문설계업 (1종)	02.12.21
제서울E-2-233호	(주)태협엔지니어링	한광현	110111-1230434	강남구 역삼동 836	전문설계업 (1종)	02.12.21

◉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451호

차량의운행제한

도로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운행을 제한 하고자 같은법 제54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도로의 종 류	서울특별시도		
노선명	소월길(남산관광고가차도)		
제한의 대 상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차량 (건설기계포함)	구 간	남산관광고가차도 ○ 위 치 - 한남동 726~한남동 산10 ○ 규 모 - 차도폭 : 7.8M - 연 장 : 295M
기 간	2002년 12월 31일부터 무기한		
이 유	고가차도의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 위험 방지		
문의처	○서울특별시 도로운영과(☎3707-8166~7) ○서울특별시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시설보수과(☎304-1527)		
위치도	(생략) 서울특별시 도로운영과 및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시설보수과에 도면비치		

구 고 시

◉용산구고시 제2002-6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용산구 청암동 64번지 5호외 93필지상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용 산 구 청 장

1. 사업명 : 청암동민영아파트주택건설사업
2. 사업위치 : 용산구 청암동 64번지 5호외 93필지
3. 사업주체 : (주)부곡레저 대표이사 유상준, 김병노
   ○주소 : 강남구 역삼동 799-16 우평빌딩4층
4. 시공자 : (주)두인종합개발 대표이사 조용식, 유대훈
5. 사업시행면적
   가. 사업지구면적 : 13,177.10㎡
   나. 대지면적 : 12,630.88㎡
   다. 도로제척면적 : 546.22㎡(기부채납)
6. 사업규모
   가. 연면적 : 48,750.47㎡
   나. 건축면적 : 2,629.71㎡
   다. 규모 : 지하2층/지상14층 4개동 150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7. 사업기간 : 2003. 2. ~ 2005. 7.
8.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 각호에 관련된 사항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설치의 인가
   ○하수도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및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9.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문의전화 : 용산구청 건축과 담당 한일기 ☎02-710-3390)

◉성동구고시 제2002-120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성동구고시 제2000-17호(2000. 3. 9)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성수1가2동 656-604~656-480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 계획변경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건설교통국 토목과(☎2290-7405~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2동 656-604~656-480간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656-480간 도로개설공사』
   ○사업개요 : 도로개설B=6m, L=120m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다.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2000. 3. 9~2003.12.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등: 변동사항 없음.

◉광진구고시 제2002-5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제2002-45호(2002. 11.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02-417호(2002.12.9)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광장동 산67-3번지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7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시민열람 및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 450-1405) 및 건설행정과(☎ 450-140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광진구 광장동 산67-3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사업의 명칭 : 광장동 산67-3호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규모 : 폭 8m, 연장 130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5년간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자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붙임(토지조서)

2002년 12월 26일
광 진 구 청 장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사 업 명 : 광장동 산67-3호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1	광장동 산67-3	임	931	931	전주이씨종중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75-198호	-	-	-	

◉중랑구고시 제2002-53호

주택건설사업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제33조 제11항 및 동법시행령제3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중 랑 구 청 장

1. 사업명 : 건영상봉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도시계획사업 시행자)
 ○건영상봉제1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박상소
 ○건영상봉제2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금석
 ○건영상봉제3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박진욱
 (주) 건영 관리인 구본국
3. 사업시행위치 및 개요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293번지외 68필지
 나. 대지면적 : 19,980.76㎡
 다. 연면적 : 62,615.91㎡
 라. 규모 : 지하2층 지상9~26층 아파트 9개동 46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2002년 12월 ~ 2005년 8월

5. 관계법률에 의거 의제처리되는 사항

가.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나.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고시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사항

구분	규모				연장	사용형태	기능	위 치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20	8m	470m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봉동산14	상봉동522	도로일부폐지 L=135m
변경	소로	2	20	8m	335m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봉동19-25	상봉동 622	
기정	소로	3	31	6m	468m	일반도로	국지도로	상봉동18-1	상봉동262-3	도로일부폐지 L=147m
변경	소로	3	31	6m	321m	일반도로	국지도로	상봉동287-3	상봉동262-3	
신설	소로	2		8m	147m	일반도로	집산도로	상봉동산14	상봉동19-25	

○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도로편입면적(㎡)	비고
18-1	대	건영상봉제1,2,3지역주택조합	1,183	407.55	
18-10	대	건영상봉제1,2,3지역주택조합	591	14.95	
19-18	대	건영상봉제1,2,3지역주택조합	162	107.14	
19-19	대	건영상봉제1,2,3지역주택조합	152	84.85	
19-20	대	건영상봉제1,2,3지역주택조합	128	71.51	
19-21	대	건영상봉제1,2,3지역주택조합	99	79.08	
19-22	대	건영상봉제1,2,3지역주택조합	225	143.97	
19-26	도로	중랑구	2,821	66.6	
19-33	도로	유호선	456	3.45	
19-45	대	건영상봉제1,2,3지역주택조합	88	25.71	
10-65	도로	건영상봉제1,2,3지역주택조합	1	1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도로편입면적(㎡)	비고
292-3	대	건영상봉제1,2,3지역주택조합	53	2.24	
292-9	대	건영상봉제1,2,3지역주택조합	150	150	
293-1	전	건영상봉제1,2,3지역주택조합	1,101	147.65	
293-4	전	건영상봉제1,2,3지역주택조합	69	26.29	
293-5	도로	중랑구	443	16.61	
294-1	대	건영상봉제1,2,3지역주택조합	1,256	34.91	
295	과	건영상봉제1,2,3지역주택조합	1,291	341.37	
297	전	건영상봉제1,2,3지역주택조합	932	536.01	
산14	임	건영상봉제1,2,3지역주택조합	1,145	674.07	
산40-4	임	건영상봉제1,2,3지역주택조합	102	27.93	
산40-6	임	건영상봉제1,2,3지역주택조합	459	377.31	
산23-2	임	김제창, 김계숙, 김양수, 김제욱	70	61.45	
286-6	전	이병택	667	94.35	
286-7	전	이희영, 이희대	360	15.92	
292-2	전	황옥련	185.12	23.84	
295-1	도	중랑구	479	71.67	
계			14,668.12	3,607.43	

다. 도로법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라. 건축법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마. 도시가스사업법제11조의규정에 의한 인가

6. 사업계획승인도면 : 생략(중랑구청 주택과 비치)

◉동대문구고시 제2002-11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도로,광장)시행자 지정및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63호('97. 3.13)로 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광장)결정 및 변경결정 되고, 동 고시 제2002-386호(2002. 10. 31)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한 세부시설(철도역)결정된 우리구 전농동 588-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광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1조, 제63조, 제64조, 동 법 시행령 제70조, 제7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이를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2127-4582~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88-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도로, 광장)
○명칭 :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 및 도로개설, 광장조성공사
다. 면적 및 규모
○철도(민자역사) : 대지면적 59,327㎡, 건축면적 34,547.65㎡, 연면적 172,657.49㎡(지하4층/지상9층)
○도로개설 : 폭원18m, 연장771m(고가도로 건설)
○광장조성 : 지상부분8,336㎡, 지하부분5,079.78㎡, 선상부분5,76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주소 및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철도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2가 122-11 한화역사(주) 정수봉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06. 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따로붙임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붙임
아. 도시계획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따로붙임
자. 도시계획법 제64조에 의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 처리사항
1)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허가
2)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
4)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
5) 지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광장>

연번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소유권외 권리명세	
1	819	도	41,589.6	188.5	서울시					지하포함 (청량리동)
2	620-67	도	23,729.9	265.25	"					지하포함
3	591-26	대	28.8	28.8	동대문구					
4	591-30	대	27.4	27.4	서울시					
5	591-31	대	4.0	4.0	"					
6	591-34	대	1.6	1.6	"					
7	591-67	대	149.1	149.1	"					
8	591-35	대	3.3	3.3	"					
9	591-41	대	78.7	78.7	"					
10	591-40	대	12.9	12.9	"					
11	591-39	대	70.4	70.4	"					
12	591-38	도	7.9	7.9	"					
13	591-42	대	18.2	18.2	"					
14	591-43	대	2.0	2.0	"					
15	591-44	대	2.3	2.3	"					
16	591-49	대	26.4	26.4	"					지하포함
17	591-47	대	111.1	111.1	"					"
18	591-45	대	126.3	126.3	"					
19	591-46	도	27.0	27.0	"					지하포함
20	588-29	철	340.0	340.0	국(철도청)					
21	591-48	대	83.3	83.3	서울시					지하포함

연번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주소	성명	소유권외 권리명세	
22	591-55	대	26.8	26.8	"					
23	591-9	대	202.6	202.6	정경숙	강남구 잠원동112 신반포8차@307-703				
24	591-10	대	14.6	14.6	서울시					
25	591-56	대	9.3	9.3	"					
26	591-51	도	319.0	234.0	"					지하포함
27	591-11	도	26.1	26.1	"					
28	591-12	대	192.4	192.4	조대형	종로구 청진동76-5				
29	591-57	대	10.6	10.6	서울시					
30	591-13	대	9.3	9.3	이미경	마포구 합정동 414-18 2층1호	(주)한국 외환은행	중구 을지로 2가181번지	근저당	
31	591-58	대	4.3	4.3	서울시					
32	591-14	도	4.6	4.6	"					
33	591-15	대	67.4	67.4	이미경	마포구 합정동 414-18 2층1호	(주)한국 외환은행	중구 을지로 2가181번지	근저당	
34	591-59	대	7.6	7.6	서울시					
35	591-16	도	7.0	7.0	"					
36	591-17	도	27.1	27.1	"					
37	591-18	대	159.3	159.3	(주)엘지유통	영등포구 여의도동20				
38	591-60	대	51.2	51.2	서울시					

연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주소	성명	소유권외 권리명세	
39	591-19	대	132	132	심정훈	대구시 서구 중리동80-1 진달래@106-410				
					이의복	성동구 구의동 451-18				
					심혜숙	"				
					심정태	강동구 둔촌동 주공@434-809				
40	591-61	대	67.1	67.1		서울시				
41	591-20	대	21.2	21.2		"				
42	591-22	대	155.4	155.4	김기탁	청량리동 235-1 미주@ 3-208	동대문구청		압류	지하 포함
					장녹순	남양주군 화도면 녹촌리 166	동대문구청		압류	"
					김기종	강남구 청담동 26-13				"
					김정순	강남구 삼성동 36-17				"
					김현주	성북구 안암동4가 23-3				"
					황정하	"	동대문구청		압류	"
					김민선	"	중부세무서		압류	"
					김민재	"				"
					김동민	"				"
					김기용	강동구 석촌동17-6	(주)한국외환 은행	중구 을지로 2가181번지	가압류	"

연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주소	성명	소유권외 권리명세	
43	591-62	대	89.6	89.6		서울시				지하포함
44	591-21	대	20.8	20.8		"				
45	591-52	구	621.0	488.5		"				지하포함
46	591-63	대	107.8	107.8		"				"
47	591-24	도	16.9	16.9		"				"
48	591-53	철	1,982.0	1,562.8		국(철도청)				"
49	591-64	대	69.1	69.1		서울시				
50	591-25	도	7.3	7.3		"				
51	591-28	도	5.0	5.0		"				
52	591-29	도	19.2	19.2		"				
53	591-65	대	133.2	133.2		"				
54	591-66	대	63.8	63.8		"				
55	591-32	도	10.9	10.9		"				
56	591-33	도	13.9	13.9		"				
57	591-36	대	8.6	8.6		"				
58	591-37	도	1.6	1.6		"				
59	588-1	철	107,767	3,166.8		국(철도청)				지하포함
계				8,790.15						

<선상광장>

연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 권리명세	
59	588-1	철	107,767.0	5,760	국(철도청)					
계				5,760						

<도로>

연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 권리명세	
23	591-9	대	202.6	78.2	정경숙	강남구 잠원동 112 신반포8차 apt 307-703				
24	591-10	대	14.6	3.7		서울시				
25	591-56	대	9.3	5.8		"				
26	591-51	도	319.0	177		"				
27	591-11	도	26.1	26.1		"				
28	591-12	대	192.4	172.6	조대형	종로구 청진동76-5				
29	591-57	대	10.6	6.8		서울시				
30	591-13	대	9.3	6.2	이미경	마포구 합정동 414-18 2층1호	(주)한국 외환은행	중구 을지로 2가181번지	근저당	
31	591-58	대	4.3	4.3		서울시				
32	591-14	도	4.6	4.6		"				
33	591-15	대	67.4	26.8	이미경	마포구 합정동 414-18 2층1호	(주)한국 외환은행	중구 을지로 2가181번지	근저당	
34	591-59	대	7.6	7.1		서울시				
35	591-16	도	7.0	5.9		"				
37	591-18	대	159.3	102.2	(주)엘지유통	영등포구 여의도동20				
38	591-60	대	51.2	41.5		서울시				
39	591-19	대	132	47.2	심정훈	대구시 서구 중리동 80-1 진달래@ 106-410				
					이의복	성동구 구의동 451-18				
					심혜숙	"				
					심정태	강동구 둔촌동 주공@434-809				

연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 권리명세	
45	591-52	구	621.0	441.1		서울특별시				
48	591-53	철	1,982.0	1,230.5		국(철도청)				
59	588-1	철	107,767	6,782.02		"				
60	587	철	18,668	3,500.04		"				
61	127-389	철	1.333	0.27		"				
62	584-3	철	4,513	552.86		"				
63	127-353	대	69	29.02	김옥성	전농동209-27				
64	127-223	대	169	136.7		동대문구				
65	127-362	대	203	203		국(철도청)				
63	127-382	도	108	94.54		동대문구				
67	127-381	도	77	63.97		동대문구				
68	127-361	대	53	53		국(철도청)				
69	127-110	대	58	8.15		동대문구				
70	127-359	대	694	9.49	김옥성	전농동209-27				
					백주선교회	전농동127-359				
71	547	철	4,443	3.77		국(철도청)				
계				13,824.43						

<철도>

연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소유권외 권리명세	
48	591-53	철	1,982.0	419.12	국(철도청)					
59	588-1	철	107,767.0	58,260.88	"					
60	587	철	18,668.0	647	"					
계				59,327.00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연번	소재지	건물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 권리명세	
1	전농동591-9	건물	연와/ 철근콘크리트	68.86	정경숙	강남구 잠원동 112 신반포8차@307-703				
		건물	기와/ 철근콘크리트	1층85.36 2층85.36						
2	" 591-12	건물	기와/ 철골콘크리트	1층76.46 2층81.88	조대형	영등포구 여의도동47 한성@C동806호				
3	" 591-15	건물	목조	30.41	이미경	마포구 합정동414-18 2층1호	(주)한국 외환은행	중구 을지로2가 181	근저당	
4	" 591-18	건물	목조와즙	6평7홉6작	박승환	성동구 화양동41-7	신용보증 기금	마포구 공덕동 254-5	가압류	
							중소기업 은행	중구 을지로 2가 36-1	근저당	채무자:벨 전자(주) 양주군 미금면 평내리 152-9
		건물	목조	73.65	(주)엘 지유통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부속 건물	도단즙/ 목조	66.84						
5	" 591-19	건물	함석/목조	1층47.93 2층47.93	심정훈	대구시 서구 중리동 80-1 진달래@106-410				
					이의복	성동구 구의동 451-18				
					심혜숙	"				
					심정태	강동구 둔촌동 주공@434-809				

연번	소재지	건물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 권리명세	
6	591-22	건물	기와/목조	66.12	김기탁	동대문구 청량리동235-1 미주@3-208				
		부속 건물	기와/목조/세멘벽돌/슬레트	1층92.56 2층92.56	장녹순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녹촌리166				
					김정순	강남구 삼성동 36-17				
					김현주	성북구 안암동4가 23-3				
					황정하	"				
					김민선	"	중부세무서		압류	
					김민재	"				
					김동민	"				
					김기종	강남구 청담동 26-13				
					김기용	강동구 석촌동 17-6	(주)한국외환은행	중구 을지로 2가 181	가압류	강재경매 신청
							동대문구		압류	
7	127-359	건물	경량철골/칼라시트	1층289.98 2층155.52 지층36.72	김옥성	동대문구 전농동209-27				127-359 외1번지 일부편입
					백주선 교회	동대문구 전농동 127-359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 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신설	중로	2	386	18	집산도로	306	동대문구 전농동588-1	동대문구 전농동587	고가도로 (일반도로)	경원선 선로위 횡단
"	"	2	387	18	"	465	동대문구 전농동127-381	동대문구 전농동591-18	"	"

2. 도시계획시설(광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광장	교통광장	동대문구 전농동588-1(청량리역앞)	8,336㎡(지상) 5,079㎡(지하)	지상,지하광장
"	"	"	동대문구 전농동588-1(선로상부)	5,760㎡	철도선상광장

※ 철도시설은 제외

◉성북구고시 제2002-14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2-123호(2002. 10.3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된 종암동 3-110~3-86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토목과(☎920-3405~8)와 건설관리과(☎920-3400~3)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 내역

○사업의 명칭 : 종암동 3-110~3-86간 도로개설공사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동 3-86~3-1280

○규모 : 변동사항 없음

다.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 부터 2003.12.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변 경 건 물 및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성북구 삼선동5가 411
사업의명칭 : 종암동 3-110~3-86간 도로개설공사

당초인가사항											변경인가사항										
일련번호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암동 3-259	1층	목조/ 세면외즙	86	상점	한문응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3-1272				종암동 3-259	1층	목조/ 세면 외즙	45	상점	한문응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3-1272			
2	종암동 3-260	1층	시멘트 블록		상점	한문응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3-1272				종암동 3-260	1층	시멘트 블럭	41	상점	한문응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3-1272			
3	종암동 3-261	1층	스레트	37	상점	노순연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3-1140				종암동 3-261	1층	스레트	37	점포 및 주택	노순연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3-1140			
4	종암동 3-262	1층	세면트 블록조/ 와즙	88	상점	김균철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3-262	종암2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88-10	근저당권 설정	종암동 3-262	1층	세면트불 럭조/ 와즙	40	점포 및 주택	김균철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3-262	종암2동 새마을 금고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88-10	근저당권 설정
5	종암동 3-264	1층	목조/ 시멘트		상점	김균철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3-262	종암2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88-10	근저당권 설정	종암동 3-264	1층	목조/ 시멘트	48	점포	김균철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3-262	종암2동 새마을 금고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88-10	근저당권 설정

물건조서(변경) 내용 외에 당초 실시계획인가 된 물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사항 없음.

◉강북구고시 제2002-10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61(1998. 8.10)호로 도시계획사업(도로) 결정고시 및 강북구고시 제61(1998. 8.10)호로 지적승인되고, 강북구고시 제92(2000.12.20)호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강북구고시 제131(2001. 12.31)호로 변경인가 고시한『번3동 138~163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토목치수과(☎901-6216) 및 건설관리과(☎901-620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당초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번3동 138~163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지의 위치 : 번3동 138~163간
  - 규모 : B=12m, L=270m
  - 결정고시 : 강북구고시제61호 (1998. 8.10)
  - 지형도면 승인고시 : 강북구고시제61호 (1998. 8.10)
  ○변경 : 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변경 없음)

다. 사업기간
  ○당초 : 인가일로부터 2002.12.31까지
  ○변경 : 인가일로부터 2003.12.31까지

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변경 없음

마.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강북구청 토목치수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토목치수과(☎901-62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북구고시 제2002-102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2-92호(2002. 11.22)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의 작성 고시하고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2002-523호(2002. 11.30)로 공람공고 완료한 강북구 미아8동 720-13번지 일대(5필지,353㎡) 마을마당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북구 미아8동 720-13번지 일대(5필지, 353㎡)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마을마당조성

다. 사업의 내용
  ○면적 : 353㎡
  ○사업내용 : 기반조성공사, 조경시설물설치 및 식재공사 등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2. 11. ~2004.12.31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바. 수용 또는 사용 등의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등 권리명세서 : 별첨 조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02-901-238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미아 8동	720-13	대지	79	79	미아동 720-13	이명구	미아동 720-13	백미순	
2	미아 8동	720-14	〃	79	79	미아동 720-14	이순례	-	-	
3	미아 8동	720-15	〃	79	79	미아동 720-15	신한욱	-	-	
4	미아 8동	720-16	〃	76	76	미아동 720-16	이우곤	-	-	
5	미아 8동	720-17	〃	40	40	미아동 720-17	주정복	중구 을지로 2가50.	중소기업 은행 삼양동지점장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구 조 (벽체/지붕)	용도	층별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층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미아동 720-13	연화조/ 세멘와즙,평옥개	주택	지층	8.30	미아동 720-13	이명구	미아동 720-13	백미순	
				1	54.38					
		세멘브럭조	물치	1	3.37					
2	미아동 720-14	연화조/ 평스라브	다가구 주택	1	44.66	미아동 720-14	이순례	-	-	
			다가구 주택	2	44.66					
			다가구 주택	3	29.66					
				옥탑	5.76					
3	미아동 720-15	연화조/ 세멘와즙,평옥개	주택	지층	8.26	미아동 720-15	신한옥	-	-	
				1	46.35					
		세멘브럭조	물치	1	5.49					
4	미아동 720-16	연화조/ 세멘와즙	주택	지층	7.5	미아동 720-16	이우곤	-	-	
				1	48.4					
5	미아동 720-17	세멘브럭조/ 세멘와즙	주택	지층	4.66	미아동 720-17	주정복	중구 을지로 2가50	중소기업은행 삼양동지점장	
				1	28.63					

◉강북구고시 제2002-103호

수유제1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결정

1. 건설부고시 제340호('90. 6. 8)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205호('92. 6.25)로 개선계획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72호('93. 9. 8)로 지구지정변경, 강북구고시 제1997-52호('97. 7. 7), 강북구고시 제1998-28호('98. 4. 2), 강북구고시 제1999-35호('99. 8.19), 강북구고시 제2000-37호(2000. 6. 1), 강북구고시 제2000-69호(2000.10. 9), 강북구고시 제2000-90호(2000.12.11), 강북구고시 제2001-86호(2001. 9.20), 강북구고시 제2001-101호(2001.10.15), 강북구고시 제2001-124호(2001.12.15), 강북구고시 제2002-59호(2002. 8.16)로 개선계획 변경결정된 수유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법 제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도시개발과(☎ 901-235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강 북 구 청 장

가.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지구명 : 수유제1주거환경개선지구
- ○위치 : 강북구 수유동 486번지 일대
- ○면적 : 34,429㎡
- ○비고 : 변경없음

나. 사업시행기간
- ○변경전 : 1992년 7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까지
- ○변경후 : 1992년 7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까지

다. 사업시행자 : 강북구청장

라. 주거환경개선계획 내용 : 변경없음

◉강북구고시 제2002-104호

미아제3,4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결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56호(2001. 5. 15)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된 미아제3, 4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제1항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강북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강 북 구 청 장

가.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지구명 : 미아제3 주거환경개선지구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1724번지 일대
- ○면적 : 19,035㎡
- ○시행방법 : 현지 개량

- ○지구명 : 미아제4 주거환경개선지구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1395번지 일대
- ○면적 : 22,127㎡
- ○시행방법 : 현지 개량

나. 사업시행기간 : 2003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다.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라. 주거환경개선계획 내용

1) 토지이용계획

○ 미아3지구

현 황			계 획			비고
총면적	19,035㎡	100%	총면적	19,035㎡	100%	
대 지	17,507㎡	92.0%	대 지	13,081㎡	68.7%	
도 로	1,528㎡	8.0%	도 로	3,870㎡	20.3%	
기 타	-	-	기 타	2,084㎡	11.0%	

○ 미아4지구

현황			계획			비고
총면적	22,127㎡	100%	총면적	22,127㎡	100%	
대 지	20,217㎡	91.4%	대 지	17,006㎡	76.9%	
도 로	1,750㎡	7.9%	도 로	3,825㎡	17.3%	
기 타	160㎡	0.7%	기 타	1,296㎡	5.8%	

2) 도시계획결정 - 공공시설정비계획

가) 도로 결정 조서

○ 미아3지구

구분	규 모					사용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규별	번호	폭원 (m)	연장 (m)					
신설	소로	3	1	6~7	236	일반도로	국지도로	791-1717	791-1652	
	〃	〃	2	6	37	〃	〃	791-2789	791-1681	
	〃	〃	3	5	39	〃	〃	791-2486	791-1630	
	〃	〃	4	4	87	〃	〃	791-1733	791-1558	
	〃	〃	5	4	105	〃	〃	791-1735	791-1558	
	〃	〃	6	4~5	87	〃	〃	791-1721	791-1836	
	〃	〃	7	4	105	〃	〃	791-2791	791-1717	
	〃	〃	8	4	71	〃	〃	791-1601	791-1577	
	〃	〃	9	4	55	〃	〃	791-1595	791-1601	
	〃	〃	10	4	11	〃	〃	791-1659	791-1664	
	〃	〃	11	3~4	57	〃	〃	791-1638	791-1649	
	〃	〃	12	3	14	〃	〃	791-1731	791-1732	
	〃	〃	13	3	11	〃	〃	791-1701	791-3258	
	〃	〃	14	3	22	〃	〃	791-2854	791-1611	
	〃	〃	15	3	19	〃	특수도로	791-1731	791-1836	
	〃	〃	16	3	67	〃	〃	791-1595	791-1605	
폐지	소로	3	58	6	56	국지도로	일반도로	791-1691	791-1717	

○ 미아4지구

구분	규 모					사용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규별	번호	폭원(m)	연장(m)					
신설	소로	2	1	8	13	일반도로	국지도로	833-24	833-23	
	〃	3	1	6	217	〃	〃	791-1483	833-23	
	〃	〃	2	6	67	〃	〃	831-11	791-1424	
	〃	〃	3	4	67	〃	〃	791-1378	791-1384	
	〃	〃	4	4	46	〃	〃	791-2436	791-1474	
	〃	〃	5	4	40	〃	〃	791-1459	791-1464	
	〃	〃	6	4	21	〃	〃	791-1616	791-1618	
	〃	〃	7	4	71	〃	〃	831-3	791-2732	
	〃	〃	8	4	115	〃	〃	791-1375	791-1427	
	〃	〃	9	4	45	〃	특수도로	791-1381	791-1384	
	〃	〃	10	4	42	〃	〃	791-1393	791-1397	
	〃	〃	11	4	14	〃	〃	791-1401	791-1404	
	〃	〃	12	3	29	〃	일반도로	791-1448	791-1446	
	〃	〃	13	3	13	〃	특수도로	791-1415	791-1416	
	〃	〃	14	3	14	〃	〃	791-1422	791-1419	
	〃	〃	15	2~3	9	〃	일반도로	791-1474	791-2846	
	〃	〃	16	〃	11	〃	〃	791-2911	791-3169	
	〃	〃	17	2	11	〃	〃	791-2733	791-3029	

나) 주차장 결정 조서

○ 미아3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미아동 791-2498번지 일대	-	860	860	

○ 미아4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미아동 791-2917 일대	-	802	802	

다) 공원 결정 조서

○ 미아3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 원	미아동 791-1713 일대	-	583	583	

○ 미아4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 원	미아동 791-1467 일대	-	331	331	

라) 녹지 결정 조서

○ 미아3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 지	미아동 791-1724 일대	-	476	476	
	2	〃	미아동 791-1678, 791-1679일대	-	39	39	
	3	〃	미아동 791-1649 일대	-	126	126	

○ 미아4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 지	미아동 791-2374, 791-2561 일대	-	105	105	
	2	〃	미아동 791-1415		58	58	

3) 주택의 건설 및 그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 강북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내용과 같음(게재생략)
4) 건축물의 개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 강북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내용과 같음(게재생략)
5) 산사태 침수등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강북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내용과 같음(게재생략)
6) 화장실 탁아소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이 확충 기타 주민의 소득원개발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7) 소요사업비의 추정 및 그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 강북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내용과 같음(게재생략)
8) 기타 : 강북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내용 및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시개발과(☎901-2355~8)로 문의바랍니다.

◉노원구고시 제2002-9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01-14(2001. 3.26)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01-101(2001.11. 20)호, 제2002-20(2002. 3.30)호 및 제2002-37(2002. 6. 5)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상계1동1163-2~1115-9간 도로개설공사』 외 2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청 토목과(☎950-4011), 건설관리과(☎950-3934) 및 주택과(☎950-37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연번	구분	사업의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또는 규모	결정고시 일 자	지적고시 일 자	비고
1	당초	도시계획사업(도로) 상계1동 1163-2~1115-9간 도로개설	상계1동1163-2 ~1115-5	B=6m L=80m	서울시고시제185호 ('73.12.3)	서울시고시 제185호 ('73.12.3)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기간 변경
2	당초	도시계획사업(도로) 상계1동 1119-9~1131-37간 (수락상세구역내) 도로개설	상계1동1119-9 ~1131-37	B=8m L=250m	서울시고시제68호 (2000.3.29)	서울시고시 제68호 (2000.3.29)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기간 변경
3	당초	도시계획사업(도로) 공릉2동 441~408간 도로개설	공릉2동441-59 ~408-28	B=6m L=160m	서울시고시제60호 ('74.5.11)	서울시고시 제60호 ('74.5.11)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기간 변경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다. 사업기간 : 당초 2002. 12. 31까지
○변경 2003. 12. 31까지
라.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변동없음
마.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노원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 및 주택과에 비치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토목과(☎950-4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고시 제2002-101호

도시계획사업(불광어린이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1-377호(2001.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제2001-95호(2001.12.8.)로 지형도면 승인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제2002-81호(2002.10.28.)로 조성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제2002-85호(2002.11. 8.)로 지형도면 승인된 우리구 불광동 236의 5호 일대 불광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62조및 같은법시행령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제2002-588호(2002.11.30.)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의 공람공고 및 도시계획법제61조와같은법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불광어린이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하고 도시계획법제63조및 같은법시행령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공원녹지과(☎350-139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36-5외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원)
(2) 사업의 명칭 : 불광어린이공원조성
다. 사업의 내용
(1) 공원 면적 : 496㎡
(2) 시설규모 : 297.58㎡(공작물 14기), 녹지조성 198.42㎡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항
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별항
아.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법제52조에 의함.
자. 인가조서 : 별항

도시계획시설(불광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은평구 불광동 236-5일원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계		496	297.58				14	
기반시설	소계	139.45	139.45					
	도로							
	광장	139.45	139.45					
조경시설		20.25	20.25				1	
휴양시설		21.56	21.56				2	
유희시설		114.27	114.27				1	
운동시설		1.53	1.53				2	
편익시설		0.52	0.52				1	
관리시설							7	
녹지및기타		198.42						
공원시설율(법정60%)		(297.58m÷496㎡)×100%=59.99%						

나. 시설조서

구 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불광동 236	496	297.58					14	시설면적 297.58㎡증
기반시설	소계			139.45	139.45						신설 139.45㎡
	도 로										
	광장	가		139.45	139.45						신 설
조경시설	소계			20.25	20.25					1	신설 20.25㎡
	사각파고라	①	공원내	20.25	20.25	목 조				1	신 설
휴양시설	소계			21.56	21.56					2	신설 21.56㎡
	앉음벽	②	공원내	16.30	16.30					1	신 설
	스탠드	③	공원내	5.26	5.26					1	신 설
유희시설	소계			114.27	114.27					1	신설 114.27㎡
	어린이 놀이터	나		114.27	114.27						신 설
	조합놀이대	④								1	신 설
운동시설	소계			1.53	1.53					2	신설 1.53㎡
	역기들어 올리기	⑤		0.72	0.72					1	신 설
	허리 돌리기	⑥		0.81	0.81					1	신 설
편익시설	소계			0.52	0.52					1	신설 0.52㎡
	음수전	⑦		0.52	0.52					1	신 설
관리시설	소계									7	신 설
	공원등		공원내							6	신 설
	표석		공원입구							1	신 설
녹지및기타	소계			198.42							
	녹지및기타			198.42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불광어린이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1	은평구 불광동 236-5	대	149		주택	이종복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6-5				
2	은평구 불광동 236-12	대	135		주택	서상식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6-12				
3	은평구 불광동 236-13	대	113		주택	김창호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6-13				
4	은평구 불광동 236-14	대	99		주택	전정희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6-14	(주)한일은행 (잠실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30	근저당권 설 정	

물 건 조 서

○ 사업명 : 불광어린이공원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1	은평구 불광동 236-5	주택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70.58㎡	1동	이종복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6-5				
2	은평구 불광동 236-12	주택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70.58㎡	1동	서상식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6-12				
3	은평구 불광동 236-13	주택	벽돌조 시멘트 기와기붕 단층주택 76.66㎡	1동	김재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3-21 태영아파트 1401호				
4	은평구 불광동 236-14	주택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76.66㎡	1동	전정희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6-14	(주)한일은행 (잠실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30	근저당권 설 정	

◉강서구고시 제2002-11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에따른지형도면

건설부고시 제197호('76.12. 9)호로 최초 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63호(2001.11. 5)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44호(2002. 9.2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2-107호(2002.12.11)호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새싹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강 서 구 청 장

○도시계획시설(새싹어린이공원)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시설명	세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전	증·감	변경후	
변경	공원	새싹 어린이 공원	강서구 방화동 581-8 일대	4,222	717	4,939	공원조성 후 맹지화된 사유지(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83, 같은동 581-10)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따른 조성계획(변경) 결정6

○관계도면 : 생략(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공원녹지과(☎2600-639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로구고시 제2002-108호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1.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되어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 고시된, 구로2동1주거환경개선지구외 5개지구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개발과(☎860-238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구 로 구 청 장

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구명칭	위 치	면적 (㎡)	지구지정고시일	최초개선계획고시일
구로2동1지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17번지일대	8,306	'98. 4. 22. 서울시고시 제137호	'98. 9. 11. 구로구고시 제125호
구로3동1-1 지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80번지일대	65,191	'90. 12. 22. 건설부고시 제936호	'92. 12. 30. 서울시고시 제458호
구로3동2지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52번지일대	9,557	'90. 8. 20. 건설부고시 제507호	'91. 8. 9. 서울시고시 제248호
구로3동3지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55번지일대	9,043	'89. 12. 30. 건설부고시 제808호	'91. 1. 3. 서울시고시 제435호
구로4동1지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38번지일대	94,686	'90. 12. 22. 건설부고시 제936호	'91. 11. 6. 서울시고시 제347호
구로6동1지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13-33번지일대	2,879	'99. 12. 14. 서울시고시 제404호	'2000. 4. 29. 서울시고시 제43호

나.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단,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시행령 별표2의 제3호사업(건축물개량)은 주민

다.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내용 : 사업시행기간 연장

○당초 :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일로부터 2002. 12. 31.까지

○변경 :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일로부터 2003. 12. 31.까지

라. 변경사유 : 노후불량주택 일부 미개량 및 공공시설(도로) 일부구간 미개설등

◉구로구고시 제2002-11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6-175호('76. 7. 27),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우리구 신도림동 316-6~신도림동 315-5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59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주택과(☎860-293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구로구 신도림동 316-6 ~ 신도림동 315-5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사업의 명칭 : 신도림 한타대림아파트 부출입구 부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구로구 신도림동 316-6 ~ 신도림동 315-5간(B=6m, L=85m) A=56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및 주소 : 한국타이어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충환 / 강남구 역삼동 647-15호
○성명 및 주소 : 대림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용구 / 종로구 수송동 146-12
○성명 및 주소 : 주식회사 삼호 대표이사 신일철 / 마포구 도화동 544번지 고려빌딩5층
마.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이내
바. 관계도서 : 생략(구로구청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구 공 고

◉광진구공고제2002-434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업체청문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이 미달되어 같은법 제86조에 의거 청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서를 공시송달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광 진 구 청 장

1. 건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2. 청문일시 : 2002.12.26~2002.12.31(5일간)
3. 청문대상 : (주)단솔금속외 17개업체
4. 청문장소 : 광진구청 건설행정과(☎ 450-1400 담당자 강면식)
5. 처분사항 :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6.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위반사항 청문
7.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공사실적 미달업체 2차청문 및 공시송달 업체

(18개업체 23개업종)

연번	업종 (등록번호)	상 호 (법인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1	창호공사업 (92-서울-08-13) 온실설치 공사업 (95-서울-22-05)	(주)단솔금속 110111-1136533	이영규	광진구 노유동 23-4 청진빌딩 303호	건설산업 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2	철근콘크리트 (강남-99-10-26)	(주)동북이앤씨 110111-1313363	김유홍	광진구 자양동 218-1 해성빌딩 3층	〃	〃
3	승강기설치 공사업 (95-서울-22-2)	(주)동우승강기 110111-1170060	김태웅	광진구 자양동220-244자원빌딩2층	〃	〃
4	미장방수 공사업 (광진-98-03-01)	(주)동원크라우팅 110111-1549637	최효동	광진구 자양동227-1 동원빌딩3층	〃	〃
5	상하수도 공사업 (광진-99-13-03) 토공사업 (94-서울-02-192)	보림토건(주) 110111-0842412	이재림	광진구 구의동 594-4	〃	〃
6	시설물유지 관리업 (광진-99-30-3)	비버산업개발(주) 110111-1711426	박민규	광진구 중곡동 158-24	〃	〃
7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92-서울-10-483)	(주)신당건설 110111-0877956	정호완	광진구 자양동 628-24 (동명빌딩 202호)	〃	〃

연번	업종 (등록번호)	상 호 (법인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8	토공사업 (94-서울-02-327) 철근콘크리트공사업 (94-서울-10-437)	여흥개발(주) 110111-1049463	안성준	광진구 자양동 660 (3층)	〃	〃
9	창호공사업 (도봉-97-08-01)	용삼건설(주) 110111-1410010	도용진	광진구 중곡동 245-31	〃	〃
10	미장방수 공사업 (95-서울-03-07)	원선케미칼 570719-	이흥남	광진구 광장동 333 R-S빌딩 404	〃	〃
11	도장공사업 (92-서울-05-59)	(주)정환테크노피아 110111-1262825	김수만	광진구 구의동74-5 소원빌딩 2층	건설산업 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12	지붕.판금공사업 (89-서울-09-02) 강구조물 공사업 (94-서울-21-87)	제현산업(주) 110111-0617998	은종석	광진구 구의동 27-10	〃	〃
13	미장,방수공사업 (94-서울-03-08)	중앙씨알엠(주) 110111-1072406	정희남	광진구 중곡동 150-152 빌딩3층	〃	〃
14	미장, 방수공사업 (서초-98-03-01)	(주)태양특수건설 110111-1485253	오승훈	광진구 광장동 515-3 대교빌딩 3층	〃	〃
15	토공사업 (82-02-430)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82-10-389) 상,하수도공사업 (82-13-209)	(주)하나로건설 134111-0011142	유청일	광진구 자양동 611-5 동아빌딩5층A	〃	〃
16	비계,구조물해체 (전남-97-07-12)	해광도시개발(주) 204311-0005302	이계양	광진구 노유동 206-6 우진빌딩 2층	〃	〃
17	상,하수도공사업 (94-서울-3-108)	현우건영(주) 110111-0420755	김춘근	광진구 구의동 221-5 빌딩2층	〃	〃
18	철물공사업 (83-11-293) 창호공사업 (83-08-145)	화인건업(주) 110111-0292873	한석우	광진구 광장동 281-4 광성빌딩2층	〃	〃

◉광진구공고제2002-435호

도시계획공람

1. 광진구 관내 구의동 546-1번지일대 동서울터미널부지에 대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22조, 같은법 제9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2개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26일

광 진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공람장소 : 광진구 도시개발과
(☎ 450-1385~7)

다. 공람내용

1)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건축물 범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 정류장)	광진구 구의동 546-1일대	지하6층 지하3층~ 지상5층 건폐율:60% 용적율: 230%이상~ 260%이하	36,704.3 (대지면적)	(감) 36,704.3 (대지면적)	0 90,496 (시설 연면적)	'81. 2. 3	입체(공간) 구역특정 준주거지역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모

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비 시 설(업무시설등)		
	위치	용도	면적	위치	용도	면적
299,426㎡	지하6층 지하3층 ~ 지상5층	여객자동차정류장	90,496㎡	지하 6층 ~ 지상46층	업무,판매,문화, 집회시설 주차장	208,930㎡

라.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중랑구공고제2002-506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건설)실시계획공람

1. 아래와 같이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묵1동 113-3호, 면목5동 173-99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주차장건설)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14일간 보여드립니다.
2. 본 사업에 대한 의견 및 상세한사항은 중랑구청 교통지도과(☎ 490-3485~7)에 문의 바랍니다.

2002년 12월 26일
중 랑 구 청 장

가. 공람장소 : 중랑구청 교통지도과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도시계획사업(주차장건설) 시행내용

사 업 위 치	사업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사업기간	결정고시 일 자	사 업 시행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1동 113-3호	묵1동 공영주차장건설	561㎡ 22면 (평면식)	2003. 4 ~ 9.	2002. 12.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02-52)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5동 173-99호	면목5동 공영주차장건설	475㎡ 15면 (평면식)	2003. 4 ~ 12.	2002. 12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02-52)	중랑구청장

라.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 : 생략
마. 사업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주소, 성명 : 생략

◉중랑구공고제2002-513호

건설업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처리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중 랑 구 청 장

○신규등록 처리내역
- 업종 : 난방시공업제2종
- 등록번호 : 중랑-02-28-2-10
- 상호 : 동네건축설비
- 대표자 : 지성용
- 영업소재지 : 중랑구 면목동 468-10
- 법인(주민)등록번호 : 500530-1******
- 전화번호 : 434-2782
- 등록일자 : 2002.12.17

- 업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등록번호 : 중랑-02-27-3-09
- 상호 : 동네건축설비
- 대표자 : 지성용
- 영업소재지 : 중랑구 면목동 468-10
- 법인(주민)등록번호 : 500530-1******
- 전화번호 : 434-2782
- 등록일자 : 2002.12.17

◉노원구공고제2002-428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공사완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15-4호 일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증축공사완료에 따른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02-6호(2002.01.23)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실시계획인가된 사

항으로 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공사 완료 되었기에 도시계획법 제7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내용을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명 : 원자력병원시설증축
2.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15-4호 일대
3. 사업면적 : 63,753.00㎡
4. 시행자
   가. 성명 : 한국원자력연구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번지
5. 사용승인내역
   가. 전체시설내역 : 연면적 47,010.12㎡, 11개동
   나. 기존시설내역 : 연면적 46,603.87㎡, 10개동
   다. 금회시설내역
      ○병 원 동 221.25㎡ 증축
      ○의료시설 60.00㎡ 증축
      ○의료시설 125.00㎡ 별동증축

◉은평구공고제2002-628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에 대해 처리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은 평 구 청 장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처리내역
-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난방시공업 제1종(은평-02-28-1-5)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은평-02-27-3-38)
- 상호(법인)명 및 주민(법인)번호 : 유진설비(351007-1******)
- 성명 : 정옥현
- 소재지 : 은평구 응암동 96-14
- 신고처리일 : 2002.12.17

◉양천구공고제2002-438호

도시계획사업(방수설비)실시계획인가고시를위한공람

1.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02-95호(2002.12.17)로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목동409번지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이며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하수과에 비치합니다.
2. 본 도시계획사업(방수설비)시행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 공고기간내 에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용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수령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사업(방수설비)
   ○명칭 :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개선공사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목동409번지 일대
다. 사업규모
   ○펌프장 450HP×4대
   ○토출관로110m
   ○기타펌프장 부대시설
라. 사업시행자
   ○성명 : 양천구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1-4번지
마.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사용 또는 수용 할 토지 및 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의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하수과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하수과(☎02-650-3415)에 문의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공사명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개선공사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목동404-1	대	408	408	대	최순희 김한주 이수진 김장욱 김성욱	안양시동안구비산동1011-6 샛별아파트203-1103 안양시동안구비산동1011-6 샛별아파트203-1103 영등포구당산동1가185-83 성북구돈암동609-1 한진아파트207동1406호 성동구행당동317-40 행당대림아파트116동202호				
2	목동404-173	대	30	30	대	서울특별시					
3	목동404-211	유	30	30	공지	서울특별시					
4	목동404-208	전	60	60	공지	서울특별시					
5	목동450-1	구	168	168	대	국(건교부)					
6	목동450-2	구	422	99	구	국(건교부)					
7	목동409-17	구	1,966	1,966	대	국(재경부)					
8	목동409-73	답	159	159	대	국(재경부)					
9	목동409-74	대	995	995	대	국(경찰청)					
10	목동409-393	구	91	91	대	국(건교부)					
11	목동409-394	구	53	53	대	국(건교부)					
12	목동409-369	구	8	8	대	국(건교부)					
13	목동409-408	제	1,210	416	공지	국(건교부)					

물 건 조 서

공사명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개선공사

연번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와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1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5	주거	이기범	목1동409-17	
2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3	주거	노백린	목1동409-17	
3	목1동409-17	건물	스레트/시멘조	15	주거	권경호	목1동409-17	
4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2	주거	김연숙	목1동409-17	
5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2	주거	한동호	목1동409-17	
6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5	주거	최선규	목1동409-17	
7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5	주거	이만복	목1동409-17	
8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2	주거	김정임	목1동409-17	
9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2	주거	박복선	목1동409-17	
10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2	주거	박현민	목1동409-17	
11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3	주거	최풍자	목1동409-17	
12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3	주거	홍성숙	목1동409-17	
13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0	주거	전금도	목1동409-17	
14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5	주거	계병화	목1동409-17	
15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2	주거	한순자	목1동409-17	
16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2	주거	김신애	목1동409-17	
17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7	주거	정용하	목1동409-17	
18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3	주거	고은님	목1동409-17	
19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25	주거	박병채	목1동409-17	
20	목1동409-17	건물	스레트/시멘조	70	주거	한춘도	목1동409-17	
21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0	주거	이순자	목1동409-17	
22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0	주거	긴홍윤	목1동409-17	
23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3	주거	안병만	목1동409-17	
24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5	주거	김홍희	목1동409-17	
25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7	주거	이제동	목1동409-17	

연번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와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26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1	주거	김종억	목1동409-17	
27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2	주거	이기동	목1동409-17	
28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9	주거	유상호	목1동409-17	
29	목1동409-17	건물	연와조/시멘조	10	주거	유성진	목1동409-17	
30	목1동409-74	건물	철근조 철골트러스	302	주거 작업장	양천구	신정동321-4	
31	목1동409-74	건물 수도 계량기 정화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2층)	1층59 2층56 1식 1식	영업	경찰청		
		지장 물수목	등나무외2종	112주	조경	전용숙	목1동409-17	
32	목1동404-1	지장 물수목	단풍나무외 12종	33주	조경	전용숙	목1동409-17	
33	목1동450-1	건물	경량철골조	234.5	재활용 센타	양천구	신정동321-4	

영 업 권 조 서

공사명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개선공사

물건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상호명	업종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목1동409-74	영업권	소백산 오리농원	한식	전용숙	목1동409-17	
2	목1동409-74	이전비 의자외 12종	소백산 오리농원	한식	전용숙	목1동409-17	

◉강서구공고제2002-413호

도시계획사업(새싹어린이공원)실시계획 인가를위한공람

1. 건설부고시 제197호('76.12.9)호로 최초 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63호(2001.11.5)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44호(2002.9.2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제2002-107호(2002.12.11)호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새싹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도시계획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도서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26일
강 서 구 청 장

가. 공람 개요
(1) 사업시행지 : 강서구 방화동 581-8번지 일대
(2) 사업종류 및 명칭 : 새싹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4) 사업개요 : 공원조성(4,939㎡)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2004.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소재지,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와 성명 : 별항

나. 공람장소 및 기간
(1) 공람장소 :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 2600-6395)
(2)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4,939.0	2,396.52	1	75.04	75.04	73	
기반시설	소 계	2,038.08	2,038.08	-	-	-	-	
	도 로	1,222.7	1,222.7	-	-	-	-	
	광 장	815.38	815.38	-	-	-	-	
조경시설		39.5	39.5	-	-	-	11	
휴양시설		-	-	-	-	-	32	
유희시설		178.0	178.0	-	-	-	8	
운동시설		65.9	65.9	-	-	-	8	
교양시설		-	-	-	-	-	-	
편익시설		-	-	-	-	-	-	
관리시설		75.04	75.04	-	-	-	14	
녹지 및 기타		2,542.48	-	-	-	-	-	

2. 시설조서

구분	시 설 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4,939.0	2,396.52		1동	75.04	75.04	73	
기반시설	소 계			1,959.08	1,959.08						
	도 로			1,222.7	1,222.7						
	광장	가	5 개 소	736.38	736.38						
		가-1	582-1	(152.2)	(152.2)						
		가-2	581-8	(291.78)	(291.78)						
		가-3	583	(48.0)	(48.0)						
		가-4	581-8	(139.7)	(139.7)						
		가-5	582-1	(104.7)	(104.7)						
		라	3개소	79.0	79.0						
		라-1	581-10	(37.9)	(37.9)						
		라-2	583	(28.8)	(28.8)						
		라-3	583	(12.3)	(12.3)						
조경시설	소 계			39.5	39.5					11	
	식 수 대	①	581-8							2	
	게 이 트	②	581-8							1	
	장 식 벽	③	581-8							1	
	열 주	④	581-8							4	
	분 수	⑤	581-8	28.3	28.3					1	
	덩굴아치	⑥	583							1	
	연 못	⑦	581-10	11.2	11.2					1	
휴양시설	소 계									32	
	막구조파고라	⑦	581-8							6	
	평 의 자	⑧	581-8							2	
	등 의 자	⑨	582-1							11	
	연식의자	⑩	582-1							3	
	단주형의자	⑪	582-1							10	

구분	시 설 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유희시설	소 계			178.0	178.0					8	
	모래사장	나		178.0	178.0						
		나-1	582-1	(140.2)	(140.2)						
		나-2	582-1	(37.8)	(37.8)						
	조합놀이대	⑫	582-1							1	
	놀 이 집	⑬	582-1							1	
	정 글 짐	⑭	582-1							1	
	그 네	⑮	582-1							1	
	놀이용철봉	⑯	582-1							1	
	흔들놀이대	⑰	582-1							3	
운동시설	소 계			65.9	65.9					8	
	체력단련장	다		65.9	65.9						
		다-1	582-1	(46.3)	(46.3)						
		다-2	582-1	(19.6)	(19.6)						
	철 봉	⑱	582-1							1	
	윗몸일으키기	⑲	582-1							1	
	허리돌리기	⑳	582-1							2	
	팔굽혀펴기	㉑	582-1							1	
	오금펴기	㉒	582-1							2	
	평 행 봉	㉓	582-1							1	
교양시설	소 계										
관리시설	소 계			75.04	75.04					14	
	관리사무실	1	581-8	75.04	75.04						
	종합안내판	㉔	581-8							3	
	교육안내판	㉕	581-8							10	
	자전거보관대	㉖	582-1							1	
녹지 및 기타	소 계			2,542.48							
	녹지 및 기타		전지역	2,542.48							

3. 도로조서

구분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 계				248.3	1,108.8				
소로	소 계			180.4	1,002.4				
	3	1	3	4.5	13.5	주진입로	방화2동 581-8	방화2동 581-8	
	3	2	2	17.3	34.6	부진입로	방화2동 583	방화2동 583	
	3	3	3.5	9.3	32.5	부진입로	방화2동 582-1	방화2동 582-1	
	3	4	5.5~7	104.7	636.4	연 결 로	방화2동 581-8	방화2동 581-8	
	3	5	5.5	5.0	27.5	연 결 로	방화2동 581-8	방화2동 581-8	
	3	6	5.5~7	39.6	257.9	연 결 로	방화2동 581-8	방화2동 581-8	
산책로	소 계			67.9	106.4				
		1	2	22.6	45.2	산 책 로	방화2동 582-1	방화2동 582-1	
		2	1	15.3	15.3	연 결 로	방화2동 582-1	방화2동 581-8	
		3	1.8	10	18	연 결 로	방화2동 581-8	방화2동 581-8	
		4	1.5	5.5	8.2	연 결 로	방화2동 581-8	방화2동 581-8	
		5	1	6	6	연 결 로	방화2동 581-8	방화2동 581-8	
		6	1	5	5	연 결 로	방화2동 581-8	방화2동 581-8	
		7	2.5	3.5	8.7	연 결 로	방화2동 583	방화2동 581-8	
	소 계			108.5	113.9				
		8	1	6	6	연 결 로	방화2동 581-8	방화2동 581-10	
		9	1	3.5	3.5	연 결 로	방화2동 581-8	방화2동 581-10	
		10	1	3.5	3.5	연 결 로	방화2동 583-60	방화2동 583-60	
		11	1~2	35	52.5	연 결 로	방화2동 581-10	방화2동 583	
		12	0.8	4.5	3.6	산 책 로	방화2동 581-10	방화2동 581-10	
		13	0.8	20	16	산 책 로	방화2동 581-10	방화2동 583	
		14	0.8	20	16	산 책 로	방화2동 583	방화2동 583	
		15	0.8	16	12.8	산 책 로	방화2동 583	방화2동 583	

4. 수용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권리	성 명	주 소	
계					4,939	4,939				
1	강서구 방화2동	581	8	전	2,383	2,38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 화곡동 980-16	
2	강서구 방화2동	582	1	전	1,176	1,176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 화곡동 980-16	
3	강서구 방화2동	583	60	전	584	58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 화곡동 980-16	
4	강서구 방화2동	583	41	대	67	6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 화곡동 980-16	
5	강서구 방화2동	581	14	대	12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 화곡동 980-16	
6	강서구 방화2동	583		전	606	606		김운섭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31-13	6/20
								김병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83-55 2층 202호	6/20
								김정애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9-77	2/20
								김정복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491	1/20
								김정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117	2/20
								김정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65-2	2/20
								김정숙	인천광역시 북구 십정동 176	1/20
7	강서구 방화2동	581	10	전	111	111		심현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81-2	

◉금천구공고제2002-329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처리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금 천 구 청 장

○업종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번호 : 금천-02-12-9
○업체명 : (주)서우시스템즈
○법인(주민)번호 : 110111-1240277
○대표자 : 민병훈
○소재지 : 금천구 가산동 327-24
대륭테크노타운 504호
○자본금 : 300,000천원
○신규등록일 : 2002.12.16

◉금천구공고제2002-331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신규등록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금 천 구 청 장

○업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등록번호 : 02-27-2-8호
○상호명 : 린나이가스보일러대부상사
○대표자 : 신수진
○주민(법인)등록번호 : 690901-2******
○영업 소재지 : 독산본동962-33
○전화번호 : ☎854-3651
○등록일자 : 2002.12.17.

◉영등포구공고제2002-535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영 등 포 구 청 장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내역
- 등록업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등록번호 : 영등포-02-27-3-11
- 업체명 : 경진전기설비
- 대표자 : 전용석
- 영업소재지 : 영등포구 신길동241
- 등록일자 : 2002.12.20

◉서초구공고제2002-564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 등록기준 에 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처리하고 동법 시행령 제 11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 초 구 청 장

단위 : 천원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종업원수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법인(주민) 등록 번호	등 록 일 자	자본금 증자액 (채권액)
미장방수 서초-02-03-08 조 적 서초-02-06-01	프리개발 (주) 8명	박 정 한 532-6466	반포동1313 반포프라자 403호	110111- 2655669	2002.12.18	200,000 (400)
미 방 서초-02-03-09	(주)여진건설 7명	김 석 중 579-8408	양재동94-9	110111- 1678163	2002.12.18	150,000 (300)
비 계 서초-02-07-12 포 장 서초-02-16-07 상 수 서초-02-13-13	서풍건설 (주) 53명	이 재 원 585-1060	방배동915-9	110111- 0613342	2002.12.18	700,000 550,000 (1,100)
포 장 서초-02-16-08	(주)청 무 24명	조 철 행 525-2561	서초동 1598-3	110111- 0862444	2002.12.18	1,100,000 700,000 (1.400)

◉강남구공고제2002-547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등록 신고를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강 남 구 청 장

○신청법인
- 상호명 : 엘제이아임건설(주)
- 법인등록번호 : 110111-2548422
- 대표자 : 김창준
- 소재지 : 강남구 역삼동 651-5

○신청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번호 : 강남-02-10-29
○등록일자 : 2002.12.16

◉강남구공고제2002-548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등록 신고를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강 남 구 청 장

○신청법인
- 상호명 : (주)태화이앤지
- 법인등록번호 : 110111-2651960
- 대표자 : 이윤석
- 소재지 : 강남구 논현동 237-6

○신청업종 : 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번호 : 강남-02-20-07
○등록일자 : 2002.12.16

◉강남구공고제2002-549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등록 신고를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강 남 구 청 장

○신청법인
- 상호명 : (주)우연이디앤씨
- 법인등록번호 : 110111-2392019
- 대표자 : 박남근
- 소재지 : 강남구 도곡동 455-34 302호

○신청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강남-02-01-68
○등록일자 : 2002.12.16

◉송파구공고제2002-385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발급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송 파 구 청 장

가. 등록일자 : 2002.12.13
나. 전문건설업 등록발급내역
○업종 : 토공사업
○등록번호 : 송파-02-02-23
○업체명 : 삼석건설(주)
○대표자 : 윤영광
○소재지 : 송파구 삼전동 7-1
○법인(주민)등록번호 : 110111-2246026

◉송파구공고제2002-394호

전문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발급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송 파 구 청 장

가. 등록일자 : 2002.12.18
나. 전문건설업 등록발급내역
○업종 및 등록번호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송파-02-27-17)

○업체명 : 대한도시가스 송파6지역 관리소
○대표자 : 이태석
○소재지 : 송파구 가락동 86-2
○법인(주민)등록번호 : 620321-1******

○업종 및 등록번호
- 난방시공업 제2종(송파-02-28-13)

○업체명 : 보구건설(주)
○대표자 : 김신동
○소재지 : 송파구 잠실동 195-7
○법인(주민)등록번호 : 110111-2350405

○업종 및 등록번호
- 창호 (송파-02-08-07)

○업체명 : (주)월드그라스
○대표자 : 권중봉
○소재지 : 송파구 잠실동 175-2
위너스빌딩 806호
○법인(주민)등록번호 : 110111-2627763

◉강동구공고제2002-416호

전문건설업신규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신규등록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강 동 구 청 장

○신규 등록업체
- 업종 및 등록번호 : 도장공사업 (강동-02-05-02)
- 상호 : 미호플랜트(주)
- 법인(주민)등록번호 : 110111-2629842
- 대표자 : 윤승용
- 소재지 : 성내동 459-6
- 등록일자 : 2002.12.17

- 업종 및 등록번호
• 창호공사업(강동-02-08-02)
• 철물공사업(강동-02-11-04)
- 상호 : 삼정기업
- 법인(주민)등록번호 : 610826-1******
- 대표자 : 이창기
- 소재지 : 성내동 445-8 제일빌딩 2층
- 등록일자 : 2002.12.17

◉강동구공고제2002-419호

단계별집행계획수립

1.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계획도로과(☎480-138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강 동 구 청 장

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설별		시행기간								비고
		계		1단계(1~3년차)		2단계(4~5년차)		2단계(6년차이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건수	84	161,563	31	45,806	16	21,021	37	94,736	
	사업비(백만원)		96,078		34,405		9,693		51,980	
도로	건수	80	152,832	29	40,748	14	17,348	37	94,736	
	사업비(백만원)		79,086		18,906		8,200		51,980	
녹지										
공공공지	건수	1	3,270			1	3,270			
	사업비(백만원)		870				870			
사회복지	건수	2	2,844	1	2,441	1	403			
	사업비(백만원)		13,296		12,673		623			
주차장	건수	1	2,617	1	2,617					
	사업비(백만원)		2,826		2,826					

나.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시설명	위 치 (사업명)	우선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간 (비행정청)	
									계	시 비	구 비		
도로	하일동89-3~132간 도로개설 공사	1	2003~2005	6	770	4,620	1,950		1,950		1,950		1
도로	암사동185~176간1개소 (암사동185~176간)	2	2003~2004	6	250	1,500	1,050		1,050		1,050		1
도로	〃 (암사동506~599간)	2	2003~2004	10	120	1,200							
도로	천호동432-13~431-38간 도로개설공사	3	2003~2004	6	64	384	700		700		700		1
도로	암사동430~418간 외1개소도로개설	4	2004~2005	6	380	2,280	1,000		1,000		1,000		1
도로	〃 (암사동431-1~431-15)	4	2004~2005	6	60	360							1
도로	〃 (암사동425-166~422-8)	4	2004~2005	6	103	618							1
도로	암사동422~421간 도로개설공사	5	2004~2005	10	120	1,200	920		920		920		1
도로	성내동94~84간외1개소 도로개설공사	6	2004~2005	4	135	540	930		930		930		1
도로	〃 (성내동87-10~132-5)	6	2004~2005	6	180	1,080							1
도로	길동 산1-4~172-2간 도로개설공사	7	2004~2007	6	740	4,440	2,420		2,420		2,420		1
도로	길동163-15~172-3간 도로개설공사	8	2004~2007	8	240	1,920	970		970		970		1
도로	암사동433~312간 도로개설공사 (암사동421-82~312간)	9	2004~2005	8	160	1,280	795		795		795		1
도로	〃 (암사동433-49~421-77)	9	2004~2005	6	200	1,200							1

시설명	위 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간 (비행정청)	
									계	시 비	구 비		
도로	길동306-3~303간 도로개설공사	10	2004	8	44	352	112		112		112		1
도로	천호동144~204간 도로개설공사	11	2004	4	180	720	267		267		267		1
도로	성내동124~135간 도로개설공사 (성내동134-5~288-28)	12	2004~2006	6	58	348	1,720		1,720		1,720		1
도로	〃 (성내동285-16~291-28)	12	2004~2006	6	250	1,500							1
도로	〃 (성내동127-1~288-28)	12	2005	6	229	1,374							1
도로	천호동37-1~38-15간 도로개설공사	13	2005~2006	6	240	1,440	210		210		210		1
도로	천호동111~134간 도로개설공사	14	2005	4	130	520	440		440		440		1
도로	성내동219~172간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 (성내동176-1~240-5)	15	2005~2006	8	120	960	1,650		1,650		1,650		1
도로	〃 (성내동172-4~236-21)	15	2005~2006	6	315	1,890							1
도로	〃 (성내동186-2~203-8)	15	2005~2006	8	290	2,320							1
도로	성내동107~124간 도로개설공사 (성내동111-3~126-1	16	2005~2006	8	264	2,112	1,102		1,102		1,102		1
도로	성내동157~160 도로개설공사	17	2005~2006	6	120	720	1,030		1,030		1,030		1
도로	성내동13-2~13-5 도로개설공사	18	2005~2006	4	90	360	500		500		500		1
도로	길동 218~292간 도로개설공사 (길동218-7~292)	19	2005~2006	6	535	3,210	1,140		1,140		1,140		1
도로	〃 (길동215-8~58-1간)	19	2005~2006	6	50	300							1

시설명	위 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간 (비행정청)	
									계	시 비	구 비		
도로	천호동186~167-195간 도로개설공사	20	2006	8	260	2,080	1,779		1,779		1,779		2
도로	둔촌동50~51-10간 도로개설공사	21	2006	6	64	384	291		291		291		2
도로	성내동40-20~84-21간 도로개설공사	22	2006	6	110	660	85		85		85		2
도로	천호동80-2~82-8간 도로개설 공사	23	2007	6	80	480	150		150		150		2
도로	천호동201-28~166간 도로개설 공사	24	2007	8	510	4,080	1,605		1,605		1,605		2
도로	천호동201-28~62-3간 도로개설	25	2007	8	241	1,928	220		220		220		2
도로	천호동227-11~86-5간 도로개설	26	2007	6	156	936	130		130		130		2
도로	천호동18번지일대 도로개설공사 (천호동1-2~17-12간)	27	2007	6	250	2,500	2,970		2,970		2,970		2
도로	〃 (천호동2-3~18-133)	27	2007	6	210	1,260							2
도로	〃 (천호동18-103~22-12)	27	2007	6	95	570							2
도로	〃 (천호동27-1~27-27)	27	2007	6	75	450							2
도로	〃 (천호동18-146~17-12)	27	2007	6	80	480							2
도로	천호동74-12~75-3간 도로개설공사	28	2007	8	50	400	40		40		40		2
도로	길동51-6~48-4간 도로개설공사	29	2007	10	114	1,140	930		930		930		2

시설명	위 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방비			민간 (비행정청)	
									계	시 비	구 비		
도로	선린초교-현대(아)간 도로개설공사 (둔촌동29-3~91-10)	30	2008이후	6	420	2,520	2,970		2,970		2,970		2
도로	〃 (둔촌동91-17주변)	30	2008이후	8	110	880							2
도로	〃 (둔촌동82-13~19-2)	30	2008이후	6	90	540							2
도로	천호동461-113~464-8 외1개소 도로개설공사 (천호동461-113~464-8)	31	2008이후	6	115	690	1,240		1,240		1,240		2
도로	〃 (천호동461-30~460-15)	31	2008이후	6	240	1,440							2
도로	천호동391-1~382-13간 도로개설공사	32	2008이후	8	145	1,160	130		130		130		2
도로	둔촌동62-8~70-111간 도로개설공사	33	2008이후	6	95	570	550		550		550		2
도로	둔촌동98-66~98-19간 외3개소 도로개설공사 (둔촌동98-66~98-18)	34	2008이후	6	160	960	1,820		1,820		1,820		2
도로	〃 (둔촌동98-71~98-61)	34	2008이후	6	30	180							2
도로	〃 (둔촌동141-3~98-47)	34	2008이후	6	70	420							2
도로	〃 (둔촌동87-6~86-2)	34	2008이후	6	50	300							2
도로	천호동185-6~177-78간 도로개설공사	35	2008이후	8	130	1,040	200		200		200		2
도로	천호동167-133~170-2간 도로개설	36	2008이후	8	170	1,360	340		340		340		2

시설명	위 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방비			민간 (비행정청)	
									계	시 비	구 비		
도로	천호동167-25~170-2 외1개소 도로개설공사 (천호동167-25~170-2)	37	2008이후	6	80	480	970		970		970		2
도로	〃 (천호동145-8~154-19)	37	2008이후	6	245	1,470							2
도로	하일동 512-3~528간 도로개설공사	38	2008이후	6	293	1,758	600		600		600		2
도로	성내동135-9~130-16 (성내동135-9~130-16)	39	2008이후	4	149	596	350		350		350		2
도로	성내동36-5~36-37간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 (성내동36-5~37-38)	40	2008이후	4	165	660	4,250		4,250		4,250		2
도로	〃 (성내동29-1~27-2)	40	2008이후	6	140	840							2
도로	〃 (성내동135-1~135-9)	40	2008이후	6	130	780							2
도로	천호동161-3~448-47 도로개설공사 (천호동161-3~448-47)	41	2008이후	6	140	840	570		570		570		2
도로	천호동437~404간 도로 (천호동397-17~402-4)	42	2008이후	4	50	200	2,930		2,930		2,930		2
도로	〃 (천호동423-78~423-157)	42	2008이후	4	120	480							2
도로	〃 (천호동423-115~425-28)	42	2008이후	4	150	600							2
도로	〃 (천호동366-1~404-1)	42	2008이후	4	320	1,280							2
도로	천호동410-169~397-179 간 도로개설공사	43	2008이후	6	50	300	210		210		210		2
도로	성내동229-1~309간 도로개설공사	44	2008이후	8	70	560	60		60		60		2
도로	고덕동450-1~암사동607-5 (올림픽하단도로)	45	2008이후	15	2,121	31,815	10,725		10,725		10,725		2

시설명	위 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방비			민간 (비행정청)	
									계	시 비	구 비		
도로	천호동201-15~397-62간 도로개설	46	2008이후	6	180	3,300	290		290		290		2
도로	성내동193-32~80-7간 도로개설공사	47	2008이후	10	935	9,350	7,900		7,900		7,900		2
도로	천호동462-39~480-36간 도로개설공사	48	2008이후	6	120	728	300		300		300		2
도로	천호동461-141~461-126간 도로개설공사	49	2008이후	8	60	480	350		350		350		2
도로	길동413-45~천호동550-6간 도로개설공사	50	2008이후	15	1,065	15,975	9,000		9,000		9,000		2
도로	하일동472-1~469간 도로개설공사	51	2008이후	8	400	3,200	675		675		675		2
도로	천호동457-12~458-26	52	2008이후	10	90	900	430		430		430		2
				8	170	1,360							
도로	천호동457-98~461-29간 도로개설공사	53	2008이후	10	140	1,400	470		470		470		2
도로	천호동453-16~409-3간 도로개설공사	54	2008이후	12	277	3,324	4,650		4,650		4,650		2
공공공지	하일동 642-1 일대	2	2005~2006			3,270	870		870		870		2
사회복지시설	둔촌동 79-2외 3필지	1	2004			2,441	12,673		12,673			12,673	1
사회복지시설	성내동 385번지	2	2007			403	623		623		623		2
주차장	명일동 312-250	2	2003			2,617	2,826		2,826		2,826		1

다. 관련도면 : 도면생략(강동구청 도시계획도로과 비치도면과 같음)

사업소 고시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2002-161호
하천점용의승인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승인하였기에 동법시행령제2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한강관리사업소장

○승인년월일 : 2002.12.20.
○위치 : 마포구 망원동 421-1
(망원보트장옆)
○지목 : 하천
○면적 : 27㎡
○목적 : 수난사고예방 및 인명구조활동
○승인기간 : 2003. 1. 1.~2003.12.31.
○승인받은자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00-5
- 성명 : 마포소방서장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2002-162호
하천점용의승인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승인하였기에 동법시행령제2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한강관리사업소장

○승인년월일 : 2002.12.20.
○위치 : 용산구 이촌동 302
(이촌지구사무소앞)
○지목 : 하천
○면적 : 27㎡
○목적 : 수난사고예방 및 인명구조활동
○승인기간 : 2003. 1. 1.~2003.12.31.
○승인받은자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2-89
- 성명 : 용산소방서장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2002-163호
하천점용의승인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승인하였기에 동법시행령제2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한강관리사업소장

○승인년월일 : 2002.12.20.
○위치 : 서초구 잠원동 121-8
(해양소년단옆)
○지목 : 하천
○면적 : 18㎡
○목적 : 수난사고예방 및 인명구조활동
○승인기간 : 2003. 1. 1.~2003.12.31.
○승인받은자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114-2
- 성명 : 서초소방서장

사업소 공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공고 제2002-가-17호

도시공원시설(독립공원주차장)관리위탁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탁하고,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관리위탁 내용

- 시설명 : 독립공원주차장
- 위치 :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독립공원 내)
- 주차장현황
  면적 : 3,150㎡
  면수 : 91면(대)
  급지 : 3급지
- 수탁관리자
  • 주소 : 서대문구 현저동1-180
  • 성명 : 최재용
- 위탁기간 : 2003. 1. 1~2005.12.31 (3년간)
- 위탁료(3년간) : 339,000천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공고 제2002-가-18호

도시공원시설관리위탁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남산공원)공원시설 일부를 관리위탁 하였기에 동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현황
   ○시설명 : 야외식물원주차장
   ○위탁사항
   - 대지 : 774㎡
   - 면수 : 소형33
   - 위치 : 용산구 이태원동 258-59
   ○2003년도 위탁료 : 13,366,680원
   ○수탁관리자
   - 주소 : 강남구 수서동 712 한아름아파트 105-503
   - 성명 : 송정석
   - 기간 : 2003. 1. 1~2005.12.31

◉서울대공원공고 제2002-81호

도시공원시설사용허가(관리위탁)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159-1 위치한 서울대공원내 호수순환도로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관리위탁하고 같은법 제6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 위치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159-1 (서울대공원내)
2. 관리위탁자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33 한덕개발(주) 대표이사 김경회
3. 관리위탁내용 : 무궤도열차(코끼리열차) 운행에 따른 호수순환도로(2.2㎞) 및 부대시설

○호수순환도로 및 부대시설내역

구분 / 시설명	면적(㎡)		구조	비고
	토지	건물		
합계	11,775.5	261		
무궤도열차 운행도로	11,000		아스콘 포장도로	
승하차장(3개소)	697.5	231	철골조, 공작물	
매표소(3개소)	78		공작물	
직원대기소		30	철근콘크리이트및철골조	

4. 관리위탁기간 : 2003. 1. 1~2003.12.31 (1년간)

◉종로소방서공고 제2002-56호

소방시설설계업공사업의변경등록

소방법 제65조의2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의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의4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종 로 소 방 서 장

구분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등록사항		
				등록번호	등록일	업종
변경전	대림산업 주식회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이용구 장진양	제서울영등포 95-122호	1995. 3.30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변경후	대림산업 주식회사	종로구 수송동 146-12	이용구 장진양	제서울종로 95-122호	1995. 3.30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성동소방서공고 제2002-23호

소방시설공사업행정처분

소방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행정처분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4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성 동 소 방 서 장

○상호 : 서울소방안전시스템
○대표자 : 이기철
○업종 및 등급(분야) : 소방시설공사업 (전문)성동제2000-5호(2000. 3.20)
○행정처분사유 : 소방법제 53조 규정에 미달
○행정처분 및 기간 : 2002.12.16~2003. 3.16
○적용법조 : 소방법제 53조, 동법제58조 및 소방법시행규칙제 97조

◉강남소방서공고 제2002-58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 신규등록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의4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강 남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 제서울강남 2002-26호
○업종(등급및분야) : 소방시설설계업
(2급 전기)
○상호 : (주)신원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대표자 : 박경종
○주민등록번호 : 621025-1******
○영업소재지 : 강남구 논현동 254-29
○등록일자 : 2002.12.21.

◉서초소방서공고 제2002-36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

소방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기 같은 법시행규칙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 초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 제 서울서초 2002-13호
○업종(등급 및분야) : 소방시설설계업
(2급기계)
○상호 : (주)서인 엠이씨
○대표자 : 520318-1******
○주민등록번호 : 구문회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9-23
○등록일자 : 2002.12.17.

◉송파소방서공고 제2002-78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

소방법 제52조 및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송 파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 제서울송파 2002-16호
○업종(등급및분야)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호 : (주)나성티엔에스
○대표자 : 박맹수
○주민등록번호 : 280731-2******
○소재지 : 송파구 잠실동 314-4번지
○등록일자 : 2002.12.21

◉송파소방서공고 제2002-79호

소방시설설계업신규등록

소방법 제65조의2 및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설계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송 파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 제서울송파 2002-15호
○업종 : 소방시설설계업 2급
○등급및분야 : 전기분야
○상호 : 파워텍엔지니어링
○대표자 : 신완섭
○주민등록번호 : 580925-1******
○영업소재지 : 송파구 송파동 147번지
노비스빌딩 202호
○등록일자 : 2002.12.21

인 사 발 령

2002년 하반기 정년퇴직 및 당연퇴직

○ 발령 제519호(2002.12.31자)

- 행정관리국 지방서기관 이창렬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지방임업서기관 김재기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지방행정사무관 이학직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지방기업행정사무관 박상진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지방기업행정사무관 이공수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지방행정주사 김일보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지방행정주사 이택동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지방행정주사 우성태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지방행정주사 상병오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지방기업행정주사 신명식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지방기업행정주사 김건수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지방기업행정주사 박철수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지방임업주사 이동배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지방수의주사 문호판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지방약무주사 김현남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지방환경연구관 신재영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지방환경연구관 유병태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6급 지방기계장 김상운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6급 지방기계장 최기년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6급 지방기계장 박성태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7급 지방전기장 홍성열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인력POOL팀) 기능7급 지방조무원 이종문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8급 지방전기원 이선구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8급 지방운전원 장석봉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8급 지방운전원 황정철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8급 지방농림원 최상인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8급 지방농림원 변영수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8급 지방농림원 한동수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8급 지방농림원 한정태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8급 지방위생원 이순금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8급 지방사무원 백복란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8급 지방조무원 지상규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8급 지방조무원 최은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8급 지방조무원 강희복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8급 지방조무원 이윤종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8급 지방조무원 김재남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8급 지방조무원 윤상구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8급 지방조무원 김금옥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8급 지방조무원 김춘식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8급 지방조무원 정흥진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8급 지방방호원 공경영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8급 지방방호원 최명규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9급 지방토목원 신창근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9급 지방건축원 손대석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9급 지방기계원 김양선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9급 지방운전원 조종욱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인
- 행정관리국 기능9급 지방위생원 류인식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9급 지방위생원 양문식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9급 지방조무원 우삼종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9급 지방조무원 최정철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9급 지방조무원 박종순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9급 지방조무원 류헌규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9급 지방조무원 한원웅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행정관리국 기능9급 지방방호원 김종태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 2002년12월31일자로정년퇴직
- 비상기획관 지방별정직2급상당 박관섭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제7조의 규정에의하여2002년12월31일자로당년퇴직
- 민방위과 지방별정직5급상당 천종수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제7조의 규정에의하여2002년12월31일자로당년퇴직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임용 및 면직

○ 발령 제520호(2002.12.31자)

- 행정관리국(인력POOL팀) 지방토목주사보 이상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토목주사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행정관리국(인력POOL팀) 기능 7급 지방전기장 이준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6급 지방전기장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행정관리국(인력POOL팀) 기능 8급 지방전기원 방상열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7급 지방전기장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전산직 및 기능직공무원 파견 연장

○ 발령 제522호

- 행정관리국 지방전산주사보 金善奎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파견(연장)근무를명함(2002.12.23～2003.10.22)
- 행정관리국 지방전산서기 李正洙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파견(연장)근무를명함(2002.12.23～2003.10.22)
- 행정관리국 지방전산서기보 宋恩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파견(연장)근무를명함(2002.12.23～2003.10.22)
- 행정관리국 지방전산서기보 徐美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파견(연장)근무를명함(2002.12.23～2003.10.22)
- 행정관리국 기능6급(통신장) 李任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파견(연장)근무를명함(2003.1.1～2003.10.22)
- 행정관리국 기능6급(통신장) 高成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파견(연장)근무를명함(2003.1.1～2003.10.22)
- 행정관리국 기능6급(통신장) 李厚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파견(연장)근무를명함(2003.1.1～2003.10.22)
- 행정관리국 기능6급(통신장) 崔鍾權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파견(연장)근무를명함(2003.1.1～2003.10.22)
- 행정관리국 기능6급(통신장) 崔永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파견(연장)근무를명함(2003.1.1～2003.10.22)
- 행정관리국 기능6급(통신장) 이우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파견(연장)근무를명함(2003.1.1～2003.10.22)
- 행정관리국 기능9급(통신원) 張喆洙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파견(연장)근무를명함(2003.1.1～2003.10.22)

기 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고시 제2002-2호

폐기물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반입수수료 및 부담금부과·징수규정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폐기물종류	반입수수료	시행일	비 고
생활폐기물(가정계)	16,320	2003.1.1	현행과 동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21,811	2003.4.1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2항 2,3호)
건설폐기물	18,070		
광재 등 17종	20,902		
폐합성수지	22,350		열경화성고분자화합물
상·하수오니	20,960	2003.1.1	현행과 동일
하수준설토	20,960		
상·하수오니(고형화)	23,328		
오니류 등 4종(고형화)	47,1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271호

하천점용기간연장승인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기간연장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주소 : 대구시 중구 북성로1가 58-8
   ○성명 :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서울 송파구 잠실동 1번지
   서울 강서구 개화동 109-11, 114-1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21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2-3
   ○면적 : 364.6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목적 : 기금조성용 광고물설치
   ○개요 : 변경없음
5. 점용기간 : 2년(2004.12.31까지)